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 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익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24

주관연구기관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공동연구자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명숙(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부장)
보조연구자 이동석(성공회대학교 석사과정)
임소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보팀장)
여준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조은영(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현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간사)

목 차

제 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내용 및 범위	3
4. 연구방법	3
제 2장 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1.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6
2. 장애 인권과 차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6
제 3장 주요 외국의 장애인권과 대응방안	23
1. 장애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정	23
2. 미국	30
3. 영국	44
4. 독일	50
5. 일본	55
6. 한국에의 시사점	61
제 4장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화에 따른 차별실태	66
1. 장애인 차별의 유형화	68
2. 차별실태의 일반적인 현황	78
3. 장애인 차별 유형화에 따른 차별 실태	91
제 5장 장애차별과 인권의식 증진 방안	144
1. 인권관련 연구의 활성화	144
2. 법·제도적 개선	146

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제고 154

제 6장 결론 157

표 목 차

<표 3- 1> 장애인의 인권옹호의 전개와 동향	60
<표 4- 1> UN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보고서’의 장애차별 분류	70
<표 4- 2>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	74
<표 4- 3> 장애인 차별 유형화	75
<표 4- 4> 연도별 접수사례	78
<표 4- 5> 성별 빈도	79
<표 4- 6> 장애유형별 빈도	80
<표 4- 7> 상담 의뢰자	80
<표 4- 8>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학대	81
<표 4- 9> 장애차별의 중복정도	82
<표 4-10> 사회권과 자유권별 장애차별	83
<표 4-11> 장애유형별 사회권·자유권 차별	87
<표 4-12>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영역 분포	88
<표 4-13> 성별 차별영역 분포	90
<표 4-14> 노동권의 침해	92
<표 4-15>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	100
<표 4-16> 성폭력 가해자	102
<표 4-17> 생존권의 침해	103
<표 4-18> 건강권의 침해	104
<표 4-19> 교육권의 침해	107
<표 4-20> 문화향유권의 침해	114
<표 4-21> 접근권의 침해	118
<표 4-22> 정보접근권의 침해	120
<표 4-23> 지원서비스에 있어서의 침해	122
<표 4-24> 형사상의 권리 침해	124
<표 4-25> 시설장애인의 권리 침해	126
<표 4-26> 가족권의 침해	130
<표 4-27> 시설입소 시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131
<표 4-28> 참정권의 침해	134



<표 4-29> 소비자의 권리 침해	137
<표 4-30> 신체자유 권리의 침해	141
<표 4-31> 재산권의 침해	14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틀	3
[그림 4-1]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개발 과정	67
[그림 4-2]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장애 차별 분류	71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이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의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소외계층이나 힘없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서로 돕는 미풍양속마저도 사회연대,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하에서 묻혀지고 말았으며, 우리는 인권 후진국으로 상당기간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인권’에 관한 주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시발점은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등장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부각되면서 인권에 관한 주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이 장애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권 문제에 있어 정도의 차이를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의 다른 어느 대상보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인권과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여러 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포함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침해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누적되어 있던 장애와 차별의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백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 86.7%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16).



이에 우리 나라 장애인 인권은 88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운동을 기점으로 1989년과 1990년대 초반 장애 관련 다양한 법·제도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선언의 첫 장을 연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 선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인권 문제는 수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예 숨겨져 버려, 노출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관한 관련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고,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별의 개선과 인식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장애 차별에 주목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애인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기존의 정책 연구 및 통계자료 등의 구체적인 분석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문헌을 통하여 장애 인권 의식개선방안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초자료의 생산을 통해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국내의 장애인 및 장애 인권실태와 관련된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목록화하고 유형화하며 기존의 장애 문제와 관련된 여러 조사 및 연구를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분석한다.

셋째, 해외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헌을 국내 문헌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언론(신문·방송)에 비친 장애인 인권 실태, 장애인 인권 상담 기록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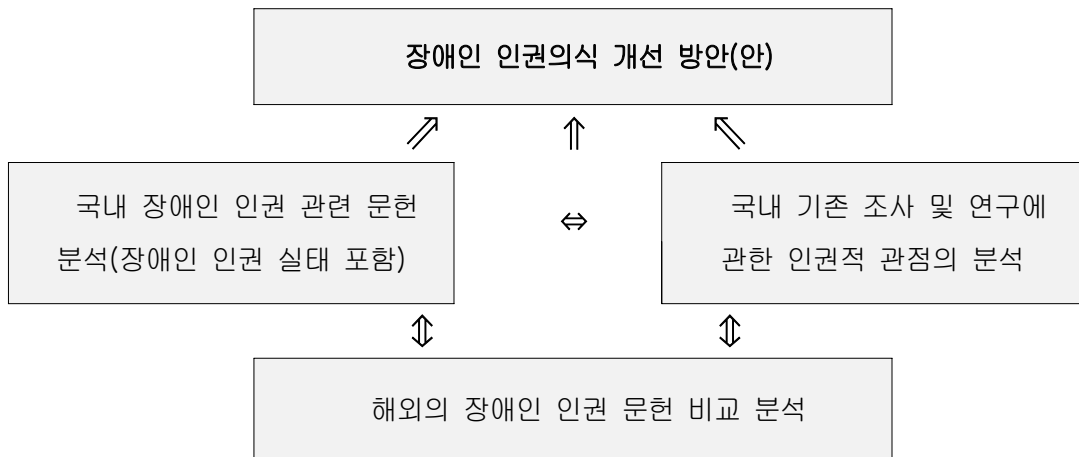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인권 관련 문헌들을 분석한다.

다섯째, 장애인 인권 인식 개선에 관한 다양한 운동과 문헌들을 분석하여 장애인 인권 의식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내용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주요 외국의 인권과 대응방안의 비교분석, 장애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구성된다. 본 연구의 틀과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1-1] 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틀



4. 연구방법

1) 문헌고찰

문헌조사는 국내의 기존 자료들과 기존 조사 및 연구들에 관한 인권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외의 장애인 인권 관련 문헌을 고찰하며, 인권과 관련된 법률, 장애인 관련 법률, 언론(신문·방송)에 비친 장애인 인권 상황과 각 장애 단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에 따른 반박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국내에서 출간 혹은 연구된 여러 조사 및 연구된 내용을 목록화하며 유형화하고 이를 내용면에서 검토한다.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2000), 전국 여성장애인 실태조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장애인 인권백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여성장애우 상담사례 보고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등의 내용을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분석하고 개별 조사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외국의 장애인권 비교분석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해외의 각종 법률과 문헌들을 국내 문헌과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체계를 수립한다.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 2001),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관련 지침 및 체크리스트(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 Policy and Practice Guide for Local Government by Disabled People), 왜 장애인 인권인가(‘Why a disability right?’, Adrienne Rubin Barhydt),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외에도 UN 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보고서(Human Rights and disability;1991)와 세계 장애인 10년 계획,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등의 자료를 모아 국내의 장애인 인권 관련 문헌과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 인권에 관한 체계를 구축한다.

3) 장애차별 사례 분석

장애 인권 및 차별사례를 유형화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결과 관련 언론(신문·방송)에 비친 장애인 인권 실태, 장애인 인권 상담 기록지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인권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유형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차별의 영역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차별실태와 사례분석은 1996년~2001년 장애인 차별 상담 사례집의 363건과 장애우 상담지기 길라잡이 12건,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의 34건, 각종 공채 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 인권 토론회 자료집 내 20건, 상담 사례 연구 자료집 25건, 2001~2002년 11월 현재 장애인전화(1588-0420) 상담일지 389건 등과 각종 언론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를 유형화하여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4) 전문가 의견수렴

장애인권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 전문가, 관련 학자,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 등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진내 정기적인 인권캠프를 개최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진행에 따른 결과를 개별적인 자문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제 2장 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1) 장애와 인권의 개념적 정의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이정은, 2001).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인권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이태재, 1983: 194). 스피겔버그(Spiegelberg, 1970)는 인권 개념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진, 기본 가치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언급은 국제기구의 각종 결의안이나 선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대순, 1998: 410). 인간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으로서 기본권의 근원 내지 핵이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다(김영순, 2001: 14). 여러 이론가들이 말하는 인권은 주로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역동성을 갖는다.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인권개념과 인권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변동과정, 그리고 실천적인 인권운동의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사고할 수 없다. 즉,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기득권을 장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

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황정미, 2001).

아이프(Ife, 2001)는 “인권이란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권리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문화적 배경·신념체계·연령·성별·능력 또는 환경 등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인간(human)으로 생각했을 때만이 ‘가능한’ 인권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로크(Lock)의 자연권이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인권은 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 혹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인권 개념을 규정했기 때문에 인권의 실제적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인권은 본질적으로 추론적(discursive)인 것으로 본다(김형식 외, 2001).

인권은 공통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된다(김형식 외, 2001). 따라서 인권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그리고 상이한 문화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결국 인권은 완벽히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장애인 인권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고, 인권 침해 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규정을 가시화 할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인권은 무엇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인권 상황을 점검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차별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인권은 법률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김형식·여지영, 2001). 인권은 법률, 철학, 정치학에 주도되어 온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서 인식되는데, 이는 너무나 분야가 좁아지면서 인권에 대한 접근조차 소홀해지기 쉽다. 또한 인권은 언제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어느 사회, 어느 국가도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권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인권의 개선과 쟁취에 관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경계하고, 싸워나가는 것만이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대한변협, 2000).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은 인권으로서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으며,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만이 아니라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사회권)도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항목을 누릴 주체인 것이다(박래군, 2000). 예컨대 장애인 취업이 특히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는 취업의 권리는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장애인의 특정한 권리의 일부로 포함된다. 이 경우, 권리 그 자체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요점은 억압적 사회구조와 담론 때문에 이 특정집단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테일러(Taylor)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기본 목표는 시민권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의 증대였으나 보편적 시민권의 개념은 계급, 성, 민족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권력 관계를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시민권과 그에 기반한 복지권은 백인과 남성중심적, 그리고 민족국가적 관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빈자,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아동, 동성애자, 이민노동자 등)와 같은 특정 개인과 집단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의 문제가 부상하게 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현재까지의 인권의 개념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을 주장하면서도 인권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비장애인-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특히 남성'으로 바라보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 배제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권개념은 정치, 노동, 사법제도 등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인권논의로 장애인 인권을 논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이나 무시, 고용을 포함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장애인 인권의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모든 쟁점, 즉 노동·교육·정치·문화·복지·환경 등 모든 문제가 장애인 인권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권 개념의 포괄성은 장점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각 나라의 경제적 발전 정도와 정치적 제도의 특성, 문화적 관습과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보편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2) 장애인 차별의 관점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marginalization)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주류(mainstream)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보호한다(Thompson, 1993). 즉 위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 차별은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 실제적으로 현상화 된다고 보여진다(오혜경, 2000). 예컨대 감염을 이유로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불허하는 치과 병원,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수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는 대학교, 지역주민의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가족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입소를 시키려는 가족들, 불심검문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신지체인을 소매치기로 모는 경찰, 이동수단이 없어 집안에 방치돼 있는 사람들 등 그 현상은 다양하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 즉 ‘장애’라는 그 자체를 중심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장애인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 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행정기관 및 공식기관 또는 비공식 기관, 개인 등이 권리 침해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업을 구할 때 사업주가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시켜 노동기회나 고용을 제한하거나 구분 또는 분류하는 행위, 장애를 이유로 근로 능력이 있거나 업무 협력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업무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행위가 노동에서의 장애인 차별¹⁾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온 것이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칙에 대한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ttp://www.usdoj.gov/crt/ada/adahom1.htm>

비과학적·미신적 선입견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알포트(Alport, 1958)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행동의 수준이 반대화나 회피 또는 차별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있거나 장애인을 우리와 별개의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외적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을 찬성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것이다(서동명, 200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학자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스너(Posner, 1989: 1311-35)에 의하면 고용과 관련하여 첫째, 여성에 대한 혐오(misogynist)와 유사하게 장애인과 유대인을 혐오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둘째, 장애인 차별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이용)의 형태에 기반을 두는 시각이다. 장애인들은 자주 그들의 손상된 지위에 대해 쉽게 체념하고 넘어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이 사실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을 합리화한다. 셋째,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의 질적·양적 능력을 무시하는데서 기인한다. 차별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잘못된 생각으로 고용의 결정을 내린다. 넷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 장애인 중에서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애인을 가려내는데 비용이 든다는 생각으로 고용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다섯째, 차별하는 사람은 제 3자의 차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차별하는 사람이 다른 근로자, 고용주,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경우인데 그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미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일(Doyle, 1995)은 장애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을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 차별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호주의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직접적 장애차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에서 직접·간접적 차별을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 차별은 고용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하였으나 그 중에 대상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의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그 요구에 응할 수 없

게 될 경우 그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때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직원채용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직접적 차별인 반면, 장애인이면 수행하기 어려운 특정한 과업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채용하는 경우는 간접적 차별이 되는 것이다.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기는 하다. 직접적 차별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리한 처우가 장애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 장애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차별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직접적 장애차별이 차별을 제공한 사람의 동기, 목적, 의도와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 부당한 대우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문제 등이 남게 된다. 간접적 차별의 경우에도 간접 차별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상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와, 법정이 얼마나 융통성 있게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의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의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각각을 증명하는데는 제한점이 따르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애인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 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며, 공정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두 가지 측면, 즉 무시와 학대의 측면과 장애인을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온정주의의 대상 측면의 관점이 일반적이다.

장애 운동이 시작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²⁾안에 실제적 측면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장애인 차별 즉 인권 침해, 또는 기본권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환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곧 장애인 인권 확보를 향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져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발현되고, 대응³⁾하고 있기

2) 장애 복지 전반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접근권을 다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 노동권과 관련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의 4개 법안이 대표적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조항이 삽입된 성폭력특별법,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다룬 정신보건법 등이 있다.

3) 2000년 초, 시각장애를 이유로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한 황선경(여성, 29세)씨의 청주대학교 입학 거부 사건은

도 하다. 이는 향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여러 실태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써 큰 ‘의미’가 있으며, 하나의 주요한 판례로써 장애인 차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사례’로 남는다.

장애 관련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제 8조 차별금지⁴⁾ 조항과 제 23조 선거권 보장을 포함하여 장애발생예방, 정보에의 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차별에 따른 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촉진기금,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이라 함)은 제4조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2%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고용률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통합교육을 근간으로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제13조에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할 수 없도록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학교장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법률 제 23조)하고 있다. 장애 관련 법률 중에 유일하게 차별금지에 따른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 학생의 대입 거부 등에 각급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 건이 모두 받아들여진 바 있어 교육차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인권 범주 중에 하나인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 취지에는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접근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황선경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고소고발로 대응함으로써 편입할 수 있었으며, 2002년 수석으로 졸업함으로써 장애인 학생 수학 능력에 관한 편견을 일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않아 장애당사자의 권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인권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3) 장애인 차별과 대응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응은 결국 장애와 차별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와 일터에서 배제(exclusion)와 주변화(marginalization) 또는 무력한 존재로 위상을 점하였다. 영국만 하더라도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은 분리이데올로기에 의해 시행되어 오다가 1993년 ‘교육개혁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교육에 대해 수요자인 학생과 부모들이 권한을 늘려가는 시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특수학교는 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해 왔으며, 이러한 관점은 결국 타고난 부족함을 병리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분리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Barnes, 1999: 96-123).

또한 장애인과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 가족의 기회비용과 보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수당, 예컨대 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한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남성에 비해 차별이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로 여성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주장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상담서비스나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들고 있다(오혜경·김정애, 2000).

장애인의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환경의 제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왔다. 사회적 배제만큼 잘 못 설계된 건축환경에서의 이동과 접근의 제한은 명백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관점이다. 전통적으로 주류에의 통합에 기본이 되는 주거나 교통,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 배제는 동일한 수준에서의 접근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상응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장애인법인 ADA(1990)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 적합하도록 작업장을 개조하는 합리적 배려의 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법은 과거의 관련법들이 주로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한데 비해 적극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과 차별금지에 대한 구제가 명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Doyle, 1995).

장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장애를 개별적 모델에 의해 접근할 것인가 사회적 모델

에 의해 접근할 것인가로 크게 구분된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며, 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각이며, 사회행동모델 또는 환경중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Oliver, 1996).

장애라는 현상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적 모델은 개별적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강조 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패의 결과는 단순하고 무작위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집단으로서의 장애인들에게 사회전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통하여 전달 되는 것이다.

장애 문제를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전 영역의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의 개조를 필수 요건으로 삼으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으로 본다. 이 모델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의도와 목적은 매우 정치적이어야 하며,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과제는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해결에 있다고 한다. 일명 소수집단모델이라고(이익섭, 1993) 일컬어지기도 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학적, 정치학적 정의가 이에 해당된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의 계기는 1988년의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운동⁵⁾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반차별 운동'을 선언하고, 이어 1990년대 초반 장애 관련 다양한 법·제도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에서

5) 함께걸음 88년 3월~90년 1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장애우 운동', 『장애우복지개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 273~282쪽.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촉매제는 역시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국제적인 움직임 속에서 199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담론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담론’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 민주화를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회 운동 세력의 공통된 관심사는 운동의 전문화 과정에서 영역별, 부문별 주제들의 인권 신장을 향한 운동이 큰 힘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히 1998년 12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선언의 첫 장을 연 『한국장애인인권헌장』⁶⁾이 채택, 선포되면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버팀목이 마련됐다. 이같이 장애 운동은 사회적 이슈로서 자리 매김 했고,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외에도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등과 같이 이러한 기본 틀이 되는 법률들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제도 및 사회정책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성과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 및 제도와 현실성과 사이의 괴리 현상은 정책집행자의 이해나 의지의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의 제한 등의 관련 요소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괴리는 우리 사회의 장애를 보는 관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법률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존중, 기회평등의 보장 등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의도들이 실현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할당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통합교육을 중심 정책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통합의 성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방치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과 구체적인 시행 규칙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성

6) 1998년 12월 9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제정·공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 선언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였다. 서광윤, ‘국내의 장애 정책 발전에 관한 소고’,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 평가 논문집』, 한국장애인개발협회, 2002. 21쪽.

의 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간의 불일치의 문제는 다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일정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괴리의 저변에는 법률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주된 관점은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참여에 적합하지 않은 무능력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장애 인권과 차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연구문헌에 나타난 장애인권과 차별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을 다룬 연구문헌은 많지 않으며, 주로 인권 일반에 관한 것이거나 사례집 또는 토론회나 워크숍 등의 자료집이 대부분이다. 학위논문에도 장애인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다만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법률적 해석(우주형, 1991 등)에 대한 주제가 있으며, 그밖에는 일반적인 인권을 다루면서 장애인 인권을 언급한 논문은 많지만 이 역시 인권에 대한 법적 의미와 해석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문적 담론은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발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2층 투표장(계단)앞에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와 고소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선거권 확보에 관한 장애계를 포함하여 사회 일반의 높은 관심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 7명에 의해 10여 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정신지체 여성 문제를 고소고발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정신지체 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은 차별에 관한 주요한 결과들을 제시한 문헌들이다.

1994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이라는 토론회 자료집을 기점으로 같은 해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 자료집, ‘한국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1995)의 자료집 발간되었으며,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이듬해인 1997년 여성장애우 전국실태조사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이들 보고서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부각시켜 다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매년 장애인 상담 사례집을 발행하고 있다. 사례 제목과 접수일, 상담 형태, 상담 개요, 처리 과정 등을 단순 기입 형식으로 묶어둔 상담 사례집은 2002년 2월 현재 총 6권으로 장애인 차별의 실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상담사례는 법률, 생활 등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 당하는 차별의 형태와 더불어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등 차별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현상을 가감 없이 기술하고 있다. 상담 사례집의 발간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상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6~2001).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학문적 탐구가 일천한 가운데 동 연구소에서는 2000년 ‘장애우 왜 인권인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장애우에게 인권은 곧 ‘삶’임을 알린바 있다.

1999년에 발표된 ‘장애인 인권백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서는 설문⁷⁾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차별의 실제적 양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들을 집대성한 보고서이다. 일반적으로 백서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과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지표가 통계수치 중심의 계량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념, 현황, 추진 방안 및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보완하고자 할 때 병행하여 발간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인권백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과 생활 환경에서의 장애인 인권 실태, 직업생활에서의 인권실태, 주거, 의료시설 이용, 시설 서비스, 교육, 가족생활, 문화·예술·여가·체육생활, 공공기관이나 선거,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과 부분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를 밝혀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의 ‘장애인 인권’이라는 단일한 주제로 만들어진 보고서로서 의미가 크다.

이듬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인권 지침서’를 만들었다. 인권교육의 길잡이와 장애

7) 장애인 인권 현장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 1천5백 여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개별적 인식의 정도와 실제로 나타난 차별 양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인 인권 마당이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장애인 인권지침서가 장애인 인권의 지침이 되고 장애인은 물론 전 국민이 장애인 인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첫 번째 인권 마당에서 인권의 정의, 역사, 인권의 내용, 추구하는 가치 등에 관해 삽화를 넣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둘째 마당에서는 인권전문가들에 의해 영역별, 부문별 인권의 문제들을 사례와 함께 접근하기 용이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장애인 인권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2년 현재 17번째의 인권보고서를 만들어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개관과 아울러 부문별 인권 실태를 사례를 들어가며 집대성한 보고서로써 사회보장의 권리라는 한 장을 통해 장애인 인권 실태⁸⁾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6개 사회단체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관련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2001년 8월, 유엔에 보고했다. 제 5장 장애인의 권리⁹⁾라는 주제로 A규약의 제 2조, 6, 7, 10, 13조에 대해 반박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오혜경(2001) 등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국내 흐름 속에서, 그 동안 태동기에 있던 여성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연구 작업도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학적 측면에서 여성 장애인의 ‘여성 그리고 장애’라는 이중 차별의 실태들을 보고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서는 여성장애인의 차별양상을 성차별과 장애차별이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11명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구성, 장애특성 등을 기본적인 틀로 하여 가족, 교육, 취업, 결혼, 보건·복지의 각 영역별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해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행한 질적 연구물

8) 특히 2000년에는 취약계층 보호의 현황이라는 작은 절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참정권 침해 사례, 교육권 침해 사례들을 포함하여 여러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9) 장애인의 노동권,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어린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문제, 노동 및 복지 정책 문제, 장애인의 접근성 : 편의시설의 문제 등 크게 4절로 나누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은종균,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 『사회권 제 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 사회권연대회의, 2001. 쪽1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 감사 자료』, 2000.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익섭(1992)은 UN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Human Rights and disability: 1991)를 번역하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인간이다’라는 기본 명제를 강조하면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기본권리를 가지며 장애가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 12월 9일 현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사실 1988년에 이미 ‘한국장애인총연맹’에 의해 “한국장애인인권선언”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단체의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포된 장애인인권헌장은 이전의 선언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헌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및 제7회 세계장애인의 날(’98. 12. 3)을 맞아 그 동안 편견과 시혜의 대상으로의 장애인을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인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선언하고자 추진한다.

이 장애인 인권헌장의 성격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장애인 사회 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일반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 인권헌장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임한 장애인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인권헌장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원리를 밝혔다.

둘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즉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여성 장애인의 권리, 국가정책 참여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¹⁰⁾

10)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 이후 이듬해 인권헌장 실천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으로 개최되어 각 영역별로 정책적 과제들이 제시되었으나 인권증진을 위한 후속조치가 추진되지 않았다.

2)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인권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전국조사가 1980년 이후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법정조사인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문항이 포함된 것은 1995년의 조사부터이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전국적인 장애인의 실태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특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이유로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태조사는 전국적인 표본조사이기에 다른 조사보다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조사로 평가할 수 있다.

1995년의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에서는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1가지 문항에 의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재가장애인의 30%가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52.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후의 조사에 비해 차별경험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정신지체와 언어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37.2%)가 여자(21.2%)보다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역시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에서는 차별에 관한 문항을 보다 세분하여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각각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학’에 있어서의 차별은 44%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별로는 정신지체와 발달, 정신장애가 2/3를 차지하여 높은 차별경험을 나타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46%의 응답율을 보이고 장애별로 정신영역의 장애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있어서는 54%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대체로 정신영역의 장애와 함께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등이 고르게 높아 결혼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에 있어서는 58%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높았다. 한편 ‘직장생활’에 있어서는 48%가 차별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취업 시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정신영역의 장애가 차별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26%만이 차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영역의 차별보다는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5년의 조사에 비해 2000년의 조사항목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차별경험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관련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장애차별이라는 인식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유일한 조사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서 의의를 찾을 수는 있지만, 장애출현율과 복지욕구 파악에 일차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항목이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 제한적으로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을 질문한 것이 아니기에 차별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함께 1999년의 장애인인권백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는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백서의 실태 자료로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취합된 총 1,644부의 설문 조사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사내용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의식, 생활환경, 직업 및 소득, 주거환경, 병의원 이용환경, 각종 사회시설 및 서비스, 교육, 가족 및 문화생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공공행정·선거, 여성 등의 영역에서 차별경험이 중심이 되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차별에 관해 초점을 둔 조사라는 점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구직시의 차별은 81.6%, 직장생활에서는 78%로 높았고, 대중교통 이용시 41.5%, 여성장애인으로서의 부모로부터의 차별 42.9%, 특수학교 진학강요 46.1% 등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문에서 많은 차별경험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그렇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대응방법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냥 무시하거나 참는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같이 차별과 인권침해에 직면한 많

은 장애인들의 대응방법이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사회전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백서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 국가단위의 절대적 지원 필요성과 민간단체를 통한 장애운동의 전개, 차별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이 제안하고 있다.

이 인권백서의 기초가 된 실태조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차별실태와 차별시의 대처방안에 관해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차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차별의 영역을 세분하여 파악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협회나 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로서 주로 회원 등이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재가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역시 조사항목과 심층 분석에 있어서의 제한점은 여전히 남는다.

이와 같이 기존의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인의 인식부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태도나 인식수준의 파악정도로 그치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권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특성상 노출되지 않고 묻혀져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포괄적이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장애인 인권관련 문헌들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연구로서 진전되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져온 경향이 있으며, 실태조사나 사례분석도 조사설계(research design)의 미비와 질적 연구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인권 실태를 전국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드러내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장 주요 외국의 장애인 인권과 대응방안

1.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정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을 통해 이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UN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비교적 효과적인 장애인인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국가들의 현행 법률과 관련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의 경우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범주에서의 고찰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기본 이념과 철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국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인권과 관련하여 영역구분에 있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대표적 범주라고 보여지는 고용, 교육, 주거, 편의시설, 교통, 정보통신, 투표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관련기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국의 법률 및 행정절차의 검토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 국제기구 관련 규정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초로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선언은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면서 발달해오고 있다. 이러한 인권일반에 관한 국제규정을 토대로 장애인은 일반적 상황과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권리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권리들을 각종 선언과 계획의 형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장애인 문제의 계발에서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 규정들을 명확히 하여 국가가 실행하도록 하는 실천의 단계로, 그리고 이러한 행동지침들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행동지침을 고안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선언(1971)」,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1975)」은 장애인문제 계발의 단계

로서 이루어진 국제적 논의이며, 1981년의 ‘세계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그리고 1983년~1992년 「유엔 장애인 10년」은 실천의 단계로서 모든 국가가 실행해야 할 행동지침이나 규정을 만들고 실질적인 시행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10년간의 실행, 평가과정을 거쳐 1992년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아·태장애인 10년’이 선포됨으로써 새로운 행동지침에 의한 종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논의들은 장애인 문제의 원인을 일관되게 장애인 인권이라는 각도에서 조명하고 해결점을 찾고 있다. 결국, 종합의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하여 접근성, 교육, 고용, 소득 및 사회보장, 가족생활과 전인격, 문화 혹은 교양, 여가와 체육, 종교 등의 대상영역에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제적인 논의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는 가족생활과 지역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정은 크게 인권일반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만의 인권을 다룬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인 인권이 인권일반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규정된 것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 상황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강조되어야 할 지점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인권일반에 대한 국제규정과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규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권 일반에 관한 국제규정

우선 인권일반에 관한 규정에는 유엔을 통해 합의된 “세계인권선언(1948)”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있다. 세 규정 모두 차별금지를 규정(세계인권선언 2조, A규약 2조2항, B규약 4조3항)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도 세 규정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¹¹⁾ 장애인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개인의 존엄성

11) 여기서 같은 국제 규정이지만 ‘선언(Declaration)’과 ‘규약’은 다소 다르다. 선언은 회원국들의 여론과 관심방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비중을 가지는 문서이다. 이에 반해 규약은 국제법으로서 규약에 비준한 국가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규약의 경우에는 선언보다 강력하다고

과 그의 생애를 자유로이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A규약과 B규약에 의하여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형사적 권리, 참정권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유럽인권조약(1950)"과 "유럽사회헌장(1961년 채택, 1996년 수정)"에서도 인권일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사회헌장은 15조에서 "장애인의 독립과 사회적 결속,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국은 장애인에게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지도, 교육, 그리고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유지 촉진을 위한 조치, 의사소통과 이동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사회결속과 공동체 생활 참여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약과 헌장에 근거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인권침해를 판단하고 있다.

3)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정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정에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 "농아인의 권리선언(1972)", "장애인권리선언(1975)", "세계 장애인의 해(1981)",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1)", "UN 장애인 10년(1983-1992)" 그리고 1993년 통과된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흐름은 인권일반의 문제와는 다른 장애인 문제를 계발하는 단계에서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 규정들을 명확히 하여 국가가 실행하도록 하는 실천의 단계로, 그리고 이러한 행동지침들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행동지침을 고안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이익섭, 1993). 아시아·태평양은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여 1993년부터 2002년에 걸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1992)"을 선포하였고 한국에서는 1998년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년)

유엔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곤란한 정신지체인의 고유한 상황에 착안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A규약, B규약 모두 비준하였다.

하여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 1971년 12월 20일에 본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인권일반에서 제시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를 갖는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1조)를 넘어서, 적절한 의료, 교육,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2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며 의미있는 직업을 가질 권리(3조),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4조), 개인적 복지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보호자에 관한 권리(5조), 착취, 학대, 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6조), 중증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 등,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7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농아인 권리선언(1972년)

세계농아연맹은 1972년 8월 총회에서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등 UN과 ILO에서 결의된 각종 선언문을 기초로 농아인의 권리를 재확인하는 선언이었다. 이 선언문에서는 농아인이라는 상황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농아인에 대한 편견의 수정(2조)과 농아 청소년에 맞는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보장구 지급, 의사소통의 권리보장(4조), 지역사회 프로그램(5조), 직업선택권 보장(6조), 의사소통의 장벽제거(7조), 농아인 조직을 농아인 권리보호의 기본도구로 인정(8조)할 것과 전문인의 훈련과 농아인 복지를 위한 연구와 개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1975년)

제 30차 유엔 총회(1975년 12월 9일)에서는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권리선언”을 결의하였다. 이 선언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이다. 본 선언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

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즉,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에 의해서 사회생활상 필요한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면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기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체로 잘 알려진 본 선언에서 주목할 권리는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조를 받을 권리(제5조), 경제, 사회계획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특별한 욕구(needs)가 고려될 권리(제8조), 가족이나 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창조적 활동과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수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연령인 사람의 정상적 생활과 가능한 한 환경 및 생활조건이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제9조) 등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이전에 제시된 선언들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들이다. 즉, 8조는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장애인은 경제, 사회의 계획단계에서 배제되어왔음을 시사하는 조항이며, 5조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조가 이루어져함을 보여준다. 9조 역시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가 박탈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려준다.

(4) 세계장애인의 해(1981)의 이념

유엔이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지만, 이것의 완전실시는 선진국에서조차도 대단히 어려운 말 그대로의 선언이었다. 따라서 1976년 유엔총회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그 주제를 “완전참여”로 결정하였다. 이어 1979년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이 사회경제개발로 인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생활조건의 향유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개발 및 사회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결의하고 주제를 “완전참여와 평등”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세계장애인의 해는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 ②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원조, 훈련, 치료, 지도를 수행하고, 유용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그들이 사회에 완전 통합될 수 있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 노력을 촉구한다.

③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를 들어 공공건물과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같은 연구조사사업을 장려한다.

④ 장애인은 경제, 사회, 정치활동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하고 기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교육시키고 주지시켜야 한다.

⑤ 장애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년)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행동계획”은 “세계장애인의 해”의 이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UN은 “세계장애인의 해” 취지를 세계 모든 국가에 철저하게 전달하고, 주도면밀하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할 설득력있는 지침(Guide line)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행동계획은 모두 201항에 걸친 것으로 세계의 여러 장애인관과 철학을 취합하여서 구체성을 가진 제안을 집약시키고 있다. 12조 1항은 “평등과 참여의 원리”를 제2항은 “장애인 정책을 종합정책 속에 위치시키는 것”을, 제3항은 “장애개념의 광범위성”을 제시하고, 4항에서 “장애개념을 명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장애개념은 세계보건기구의 장애분류를 수용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 또는 손상(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와 사회적 불리(Handicap)사이에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가 있음을 부각시켜 장애의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5항에서는 “장애인이 놓여있는 사회환경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제6항은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서의 공생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6) 유엔 장애인 10년(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

이러한 세계행동계획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유엔 장애인의 10년(1983년~1992년)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가수준 및 국제수준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애예방과 재활, 기회평등이라는 행동계획의 목표달성 부진에는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와 사회 대중의 인지와 관심은 촉진되었으나, 선언적 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취약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장애인복지불균형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국가적 수준의 결정적 협력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지표명, 실질적 재원증가, 유엔의 지도역할 강화, 자문 혹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1993년)

1992년 막을 내린 “유엔장애인 10년”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1993년 12월에 채택)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총22개의 규칙과 191개의 세부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기본규칙은 장애인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복지가 성취해야 할 대상과 과제를 제시하기 이전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기본규칙은 장애인의 욕구와 욕구발생 원인간의 함수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장애인의 문제는 서비스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장애인 권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기본규칙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점은 지역사회통합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기본규칙은 장애인과 그 단체의 참여와 자문역할의 범위를 거의 모든 규칙의 세부내용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규정들보다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아·태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

“UN장애인 10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엔 장애인 10년 동안 세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계발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형태에 머물러 구체적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은 미흡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밀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까닭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이사회 (ESCAP)에서는 1992년

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선포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계획안 역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그 이념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9) 한국장애인인권헌장(1998년)

1998년 12월 9일 현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사실 1988년 ‘한국장애인총연맹’에 의해 “한국장애인인권선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단체의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선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편견과 시혜의 대상으로의 장애인을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인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선언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헌장의 성격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장애인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시하고, 일반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인권헌장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임한 장애인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여성 장애인의 권리, 국가 정책 참여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2. 미국

미국의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규정된 ‘법의 평등보호’에 근거를 두고, 1964년의 시민권법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권법상의 차별금지조치는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에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ADA가 제정되기 전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 첫째는 시민권법을 수정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¹²⁾과 같은 기존의 차별영역에 장애

차별의 영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고, 둘째는, 장애는 기타의 차별사유와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르므로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종래의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제들이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권리구제수단도 미비하다는 인식 아래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1984년 Robert L. Burgdorf Jr. 와 Christopher Bell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여가 없는 영역에 대하여도 효과가 미치는 장애인차별금지입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논문이¹³⁾ 발표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장애심의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ies)가 1980년대 후반에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두 개의 보고서를¹⁴⁾ 제출하여 포괄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법률에 포함될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1988년 이 보고서들을 근거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안¹⁵⁾ 의회에 상정되었고 최종적으로 1990년 7월 12일 하원을, 7월 13일 상원을 통과하여 7월 26일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동법은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 1장(Title I),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 2장(Title II),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public accommodation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제 3장(Title III), 통신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제 4장(Title IV)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한 제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제1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2년 7월 26일 발효되었다.

1) 고용 (Employment)

(1) 관련법안

미국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장애

12) 성별(sex)은 제7장 고용관계에서만 금지된 차별근거로 규정되었다.

13) Robert L. Burgdorf Jr. & Christopher Bell,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 Statutory Blueprint*, 8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Law Report* 64 (1984).

14) National Council on the Handicapped, *'Toward Independence'* (1986) 및 *'On the Threshold of Independence'* (1988).

15) 이 법안의 공식명칭은 'an act to establish a clear and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ies'이다.

인법(ADA 1990)을 들 수 있고, 그 외,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시민권 법(Civil Rights Act of 1991), 공공서비스개혁법(CSRA of 1978, Civil Service Reform Act)의 법안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및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1) ADA (Title I & V)

이 법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법은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고용상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ADA를 관장하는 미국의 법무부(Dept. of Justice)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AD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a. 합리적인 고용환경의 제공: 이는 업무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고용에 응시하거나, 고용 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와 상관없이 다른 동료와 동등한 기회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의 개선, 업무의 재구조화, 업무시간의 조절, 공석에 대한 재배정, 검사도구, 훈련 및 교육교재, 정책의 조정, 장애유형에 따라 읽어주는 사람이나 해석해 주는 사람을 배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작업환경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격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이러한 합리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

b. 적용범위 : ADA의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고용유치, 고용, 교육 및 훈련, 업무배정, 승진, 임금, 혜택, 해고, 퇴직, 그 외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된다. 또한, 더 나아가서, ADA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c. 의료적인 검사나 장애에 대한 질문금지 : 고용주는 면접시 응시자의 장애유무나 장애정도에 대해 물어볼 수 없으며, 고용이 확정되기 전에 어떠한 의학적인 검사도 요구할 수 없다. 고용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한 의료적인 검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장애에 대해 물어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학적인 검

사에 의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지라도 고용상태를 취소할 수 없으며, 장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Rehabilitation Act of 1973(section 501 & 505)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그램이나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연방정부에 의한 고용이나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환경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기준은 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다.

3)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91)

고용에서의 의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CSRA(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이 법안은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연령, 장애와 상관없이 인사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관련기관

미국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과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동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이다. EEOC는 ADA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의 실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조정 등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EOC는 미국 전역 50개 도시에 배치되어 장애로 인한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방지 또는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은 일정기간내에 EEOC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지역의 고용관련 기관에 신고접수 할 수 있으며, EEOC로부터 소송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EOC와 법무부(Dept. of Justice), 노동부(Dept. of Labor)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관련된 이러한 법률의 실행 및 책임에 있어서 효과적인 업무조정과 분담 및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교육 (Education)

1) 관련법안

미국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대표적인 법안은 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재활법(Rehabilitation Act)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그리고, 최근의 아동보호법(No Child Left Behind Act) 등을 들 수 있다.

1)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이 장애인교육법은 모든 공공교육기관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개인적 욕구에 따라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공교육기관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을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특수교육이나 서비스들은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 욕구가 반영되어서 나타나야 한다. IDEA는 특히, IEP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학생의 IEP는 아동의 교사, 아동의 부모, 아동, 특수교육 담당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다분야의 팀 접근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만약 제안된 IEP에 아동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정부 교육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1997년에 개정된 장애인교육법(IDEA)는 단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행교육체계에 있는 모든 아동들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적인 역할과 결정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나 학교당국의 불필요한 서류작업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2) Rehabilitation Act(Section 504)

이 법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은 장애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나, 대학,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은 미국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3) ADA(Title II)

ADA의 Title II에서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 서비스에 있어서, 즉, 공공영역에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인해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규모나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모든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들 (eg. 공공교육, 고용, 교통, 여가, 의료, 투표, 사회서비스, 법정, 지역 사회 모임 등)에 있어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건축물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하며,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절차, 실행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청각이나 시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적 접근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지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부에 신고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4와 ADA의 Title II는 모두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방해하거나, 장애로 인한 학생 및 관련된 사람들(부모, 관련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규에서 규정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란, 학습, 교과과정, 체육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을 다 포함하며, 학교 밖에서의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4) 아동보호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2002년 1월 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은 초등교육에 있어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또는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해 이들의 교육적 성장 및 발달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보다 양질의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관련기관

시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와 특수교육 및 재활국(Offices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은 서로 연계하여 법에 의해 규정된 장애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 학교지역에 대한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ffice for Civil Rights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4와 ADA의 Title II에 규정된 장애에 따른 차별금지법의 실행을 감독한다. 먼저 재활법의 section 504에 의해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 대학,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은 미국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국은 Rights는 Rehabilitation Act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DA의 Title II 역시 공공영역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민권국은 미국 사법부에 의해 모든 공공교육 영역이나 공공도서관에서 ADA의 Title II 실행여부를 감독 및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이러한 법안들이 실행가능 하도록 미국의 교육부 (Dept. of Education)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3) 교통 (Transportation)

1) 관련 법안

장애인들의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와 항공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를 들 수 있다.

1) ADA(Title II)

ADA는 미국의 교통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이나 이동성에 있어서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법에 포함되는 공공교통 서비스는 시내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모든 공공교통시설을 의미하며, 교통당국은 장애로 인해 이러한 교통서비스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 a.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자동차나 버스, 도로 등의 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조되어야 하며,
- b. 일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도와주는 교통서비스(paratransit)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이 법은 국내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항공사들은 장애인들의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의 탑승구 안내정보나 비행안전에 관한 정보습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인도견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동물은 승객과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련기관

미국의 교통부(Dept. of Transportation)는 장애인들의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며, 이러한 공공교통에서의 차별이 있을 경우 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애인들의 교통서비스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부의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으로 도로나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ADA의 실행에 관한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의 여러 산하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통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방운송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은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FTA는 지역의 모든 교통관련 조직이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즉, 회사들의 주요한 관심영역으로서 교통수단의 탑승, 하차, 필요장비 등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관련기관으로 Office of the Secretary, Consumer Affairs Division은 공항이나 항공기에서의 장애인들의 접근을 보호, 감독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항공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에 의해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장애차별에 대한 문제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주거 (Housing)

1) 관련법안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법은 주거법(Fair Housing

Act)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은 장애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도 주택관련기관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다.

1) Fair Housing Act of 1988

이 법은 주택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성,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포함되는 주택은 개인주택,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지원을 받는 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된다. 장애인 차별금지과 관련하여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a.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택을 사고 팔거나 또는 거주지역, 주택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차별 받을 수 없으며,

b. 집주인은 장애인이 주거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원칙에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며 (eg. 집안에서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원칙이 있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도선은 예외 등),

c. 집주인은 장애인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장애인 본인의 부담으로 개인공간이나 공공공간을 개조하기를 원할 때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d.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g.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넓은 복도 및 입구, 욕실에 안전바 설치 등).

(2) 관련기관

장애인들이 주거법(Fair Housing Act)의 위반을 경험할 경우 주택 및 도시개발부(U.S.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장애인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HUD나 미국 사법부에 차별문제를 신고하여 소송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거 및 동등기회국(Offices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FHEO)와 지역계획 및 개발국(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CPD)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사인한 “New Freedom Initiative”의 한 부분인 ‘Community Based Alternativ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에

의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프로그램, 법규나 규정을 개정하는 과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 문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5)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1) 관련법안

시각, 청각, 언어 등의 장애로 인하여 통신이나 정보획득상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ADA,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등을 들 수 있다.

1) ADA(Title IV)

이 법은 청각이나 언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화와 T.V.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a. 전화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 TRS): TRS 서비스는 청각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또는, 일반인이 청각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경우 communication assistant가 중간에서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즉, 청각장애인의 경우 communication assistant가 상대방 말을 타이핑해서 청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 해주거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특수한 전화기를 사용하여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이를communication assistant가 타이핑하고,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읽어주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법에 의해 통신회사들은 미국 전역에서 일주일 내내 24시간동안 TRS를 제공하여야 한다.

b. 폐쇄자막(Closed captioning) : T.V.등 시각적이 화면을 가지는 기기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내용은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2)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장애인들과 관련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a.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통신기기의 개발강조(section 255) : 전화 및 통신 관련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그러한 장비와 서비스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제작할 것을 요구한다. 즉, 전화, 휴대폰, 호출기, 통화중 대기, 전화교환원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손쉬운 이용을 가능케 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b. 폐쇄자막 및 문자해설 방송(Closed-captioning & Video description) 규정 (section 713) : 시각 또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즉, T.V 프로그램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closed-captioning)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내용에서 귀로만 듣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말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는 문자해설(video description)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c. 통신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section 706)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는 보다 효과적인 통신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방해요인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기초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특히, 초등 또는 중등교육기관에서 이를 사용하여 장애아동들에게 교육적으로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보편적인 서비스 강조 (section 254) : 학교, 도서관, 병원 등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조와 요금감면 등 이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3) Rehabilitation Act(Section 508)

이 법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전자, 통신, 정보 시스템은 일반인 뿐 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개선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 시스템이 한가지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면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2) 관련기관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감독, 지시, 지원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중계서비스(TRS)의 최소기준에 대한 규정, TRS 기금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조인,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전화 및 통신 관련기기 제작과 관련하여 이의 실행여부 감독, 프로그램의 자막방송이나 설명에 대한 실행여부 감독 등 장애인들의 정보통신상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 공공시설

(1) 관련법안

다양한 공공시설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ADA(Title III)와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ABA)을 들 수 있다.

1) ADA(Title III)

이 법은 일반대중들이 이용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의 공공장소와 상업시설에 있어서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식당, 호텔, 극장, 사립학교, 병원, 탁아시설, 여가활동시설, 쇼핑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영리, 혹은 비영리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정책, 실행, 절차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정과 함께 장애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수용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들은 장애인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물리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시설의 기능상 개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 건축한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반드시 장애인들이 접근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나 과정의 경우 그 장소나 시험 및 과정방식은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사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교통서비스에서도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Architectural Barriers Act(ABA) of 1968

이 법은 건물환경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거나 또는 연방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건축 또는 개량하는 모든 건물과 시설들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연방정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관련기관

ADA(Title III)의 위반사례는 법무부(Dept. of Justice)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Architectural Barriers Act(ABA)의 법규 위반사례는 장애물시정위원회(Barriers Compliance Board)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근위원회(Access Board)는 이 법에 의해 장애인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규 지침의 준수와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7) 투표권

(1) 관련법안

장애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법안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투표접근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와 ‘유권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를 들 수 있다.

1)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of 1984

이 법은 미국전역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만약, 투표장이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면 투표관련기관은 이들을 위해 투표 당일날 대안적인 방안을 제공하여 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주정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별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선거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선거와 관련된 등록이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Motor Voter Act” 로 알려지기도 한 이 법은 모든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수

민족이나 장애인들이 차별로 인해 초래되는 낮은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주정부 기금에 의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선거등록, 등록서류 작성, 서류 제출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주요한 책임이 있다.

(2) 관련기관

장애인에 관한 선거참여나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사법부내의 Voting sec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8) 시설장애인

(1) 관련법안

1) 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of 1980(CRIPA)

이 ‘시설생활자를 위한 시민권법’은 U.S. Attorney General이 미국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시설들, 즉, 감옥, 청소년 교정기관, 양로원, 정신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시설 등각종 시설의 수용상태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Attorney General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결핍상황 여부 또는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설상태나 환경이 거주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ADA의 Title II와 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4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사항 등 연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시설내에서 위반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관련기관

시설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지원과 정보는 미국 사법부내의 특별기소부(Special Litigation Section)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다.

3. 영국

영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의 급여 내용이 사회적 제위험을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회복지제도가 민주적 입법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다양한 사회복지 급부와는 별개로 공·사적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기나긴 요구에 의하여 1995년에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의 ADA법의 제정(1990)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에서의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영국에서도 교육, 고용, 이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장애인권리보장을 시작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재편을 시도하던 시기와도 맞았다.

영국에서의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은 1979년 몇몇 장애인 단체들이 노동당에 장애인에 대한 규제에 대처하는 위원회(CORAD; Committee On Restrictions Against Disabled People)의 수립을 요구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1982년 CORAD는 장애인차별의 사례를 찾아내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집행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후, 1985년 50개 이상의 장애인 및 회원단체가 구성되어 차별금지법 수립을 위한 캠페인 “Rights Now” 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모든 정당의 상하원 의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장애연구모임’의 지지는 대단히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고, 의회로비 및 지지자들에게 250,000통 이상의 엽서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런 운동의 결과로 1980년대 초부터 개개인의 의원들로부터 법안이 속속 상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는 원칙을 밝히는 수준의 것들이었다.

1991년 Alf Morris의 Civil Rights(Disabled Persons) Bill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이었으나 부결되었으며, 1993년 Roger Berry에 의해 재차 소개되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정부안으로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안에 대항하여 1994년 Harry Barnes의원(노동당)은 Civil Rights Bill을 의회에 제출하여 장애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결국, 1995년 정부안인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가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을 피해나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임으로 이는 많은 헛점

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으며, 특히, 이 법이 기준고용율을 철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규, 1996). 영국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으로는 “장애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와 ”장애권리위원회법(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Act of 1999)”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후 장애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적용 및 장애차별금지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영국 리즈대학(Univ. of Leeds)에서 만든 자료가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실천에 관한 지침(A Policy and Practice Guide for Local Government by Disabled People, 1996)이다. 이 책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이론적 배경인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 법안에 대한 설명,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정책 개발 및 집행 시 사용할 수 있는 장애평등기준(Disability Equality Standard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중 특징적 부분은 장애평등기준(Disability Equality Standards)을 제시한 것으로서, 장애평등기준은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하려는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장애평등기준은 영국의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에서 발간한 인종평등기준을 참고로 하여 장애의 특성에 맞추어 새로이 개발한 것이다.

장애평등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성, 직접적인 행동, 결과로서 나타난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평등 기준의 영역으로 정책과 기획 분야, 재화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지역발전 분야, 고용분야, 시장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고용 (Employment)

(1) 관련법안

1)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of 1958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1944년 제정되어 1958년 개정된 장애인고용법(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에 의해 종업원 2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3%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조정금이나 프랑스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었으며,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원조를 중심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의무고용제도는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제정과 함께 1996년 말에 폐지되었다.

2)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 (Part II)

장애인 고용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장애차별금지법(DDA: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이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Part II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련 규정은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996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고용인 및 취업지원자에 대한 차별을 두 방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고,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DDA는 기존의 할당고용제(quota system)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장애인을 영구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낙인시킨다는 비난을 해소시키면서 장애인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의 Part II에서는 장애인 고용인 및 지원자에 대한 교역단체(Trade Organization)의 의무 및 이들 단체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기관

장애차별금지법의 주관기구는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DRC) Act of 1999"에 의해 설립된 장애권리위원회(DRC)이다.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해 국가장애위원회 (The National Disability Council, NDC)가 설립되었으나, 법률기능과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기능만 갖고 있을 뿐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였다. 특히,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의 제정과 동시에 의무고용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이 더욱 악화되었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제적인 진전도 없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1998년 6월 정부는 DRC의 설립 필요성 및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년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DDA에 의해 The National Disability Council (NDC)이 설립되었으나, 이 기구는 정부부처에 자문기능을 갖고 있을 뿐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CRE), 기회균등위원회 (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처럼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위하여 소송을 하거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조사할 권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1999년에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Act가 제정되어 장애인권리위원회 (DRC)가 설립되었다. 이 법에 의해 NDC는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DRC가 설립되었으며, 인종평등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장애인과 피진정인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합의 후 이행계획서 (action plan)를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세우게 하여 5년간 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DRC는 맨체스터에 본부가 있으며 런던, 에딘버그, 카디프 3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고용에 대한 차별도 DRC가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진정이 있을 경우 합의를 주선하고 안될 경우 조사 후 조정을 하며, 소송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DRC에서는 별도기구로 컨설팅 기구를 두어 기업을 상대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복할 경우 직권조사를 하여 소송을 함으로서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들도 기업이 장애인을 위해 직무환경 등의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약 150개 정도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와 재활을 위한 왕립협회(The Royal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도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2) 교육 (Education)

(1) 관련법안

1) Education Act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1944년 제정된 교육법이 시초이다. 이 법에서는 지역 교육청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아동의 특수한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970년의 교육법에서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어떠한든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훈련을 중단하고, 그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당국으로 넘겼다. 1981년 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여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Part IV)

장애차별금지법 (DDA)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에서의 차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 법의 Part IV에 의해 1993년 교육법 (Education Act), 1992년 고등교육법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에 통합교육을 천명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법적 권리를 확보할 만한 관련규정이 없음에 따라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Disability Rights Task Force (DRTF)는 1999년 12월 “From Exclusion to Inclusion”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학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및 학교가 향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3)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Bill of 2001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2001년 5월에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Bill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특수교육욕구를 가진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기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교육적 욕구를 지닌 장애아동이나 성인에 대해 교육기관이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행동프로그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 걸쳐 집행될 것이며, 교육에서의 장애차별금지법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확대될 것이다. 이 법은 2002년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관련기관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Bill 에 의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DRC)을 활용한다. 이 법의 부칙 중 schedule 7에서 DRC법의 개정을 통해 이 법의 주관기관으로 DRC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DDA에서 교육분야의 차별이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2001년 5월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Bill이 통과되고, 주관기구로 DRC를 지정함에 따라 교육에서의 장애차별도 법으로 금지되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차별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이, 사립학교

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지방교육청은 매년 장애인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 (Transportation)

(1)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이 법에서는 정부, 특히 국무부(Secretary of State)로 하여금 장애인이 택시(개인고용 차량 제외), 공공교통, 기차 등 공공교통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안내견 등의 이동로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 주거 (Housing)

(1) 관련법안

1)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

장애인의 부동산 구입 및 임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는 교육, 재화에의 접근과 더불어 3대 차별로 규정하여, 엄격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의 주체는 대부분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매매 및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이 매매 및 임대 행위에 대해서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관련기관

이 규정의 주관기구는 지방정부와 장애인권리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DRC)이다.

5) 공공시설

장애인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Part III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는 일반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Part III의 의무들은 3단계를 거쳐 확대 적용된다. 먼저, 1996년 12월부터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덜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차별로 규정되고, 1999년 10월부터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200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의 건물에 영구적인 물리적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마지막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Disability Rights Commission(DRC)은 2000년 5월 8일부터 새로운 법의 해석을 돕고 조언을 하기 위해 공동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4. 독일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독자적인 시안들을 입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많은 토의의 과정이 있었다. 사실 독일에서 차별금지의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그들의 사회 혹은 역사 속에서 차별금지의 문제는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혹은 철학적 성향, 노조활동, 성적(性的) 지향성 (eg. 동성애), 윤리, 가족상태, 건강상태, 연령 등의 이유로 인해 차별 혹은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 역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여러 시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오랜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2000년 1월8일 독일의 “장애인법률가 포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안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안은 추후 장애인균등법의 모태가 되었다. 동년 10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연방정부의 장애인전권자¹⁶⁾는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jetzt(장애인균등법 지금)” 라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애인, 관련단체, 경제계 및 연

16) 연방 노동 및 사회질서부(BMA)에는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권자(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der Behinderter)가 있다. 이 전권자는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 혹은 장애인단체를 위해 연방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권자는 장애인들과 행정기관 그리고 재활수행기관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 다른 입장에 서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제거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전권자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州)정부에도 1인씩 임명되어 있다.

방의회 의원들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에 합의하였다. 2000년 12월 연방 정부 수상실은 연방 노동 및 사회질서부(BMA)에 법안제정에 관한 입안업무를 지시했고, 기존의 BMA, 연방정부 장애인전권자, 그리고 장애인법률가포럼 외에 2001년 1월 18일 독일의 각 주(州) 및 기초단체 대표들이 법안 작성작업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의 결과로 2001년 8월 31일 장애인균등법 초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7일 연방 각료회의에서 초안이 가결되었고, 11월 15일에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제1차 독회(讀會, Lesung)가, 그리고 11월 20일에 연방상원(Bundesrat)에서 독회가 이루어졌다. 2002년 1월 23일 연방하원의 “노동 및 사회질서 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이 법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2월 28일 연방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고 2002년 5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법안은 명칭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반차별법”을 위시하여 “(장애)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제거에 관한 법” 혹은 “장애인균등법”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조금은 완곡한 표현인 “장애인균등법”으로 결정되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이름의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물리적 장벽의 제거 문제와 법을 위반했을 시 제재수단의 확보 및 제재조치의 강도문제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어서 오랜 동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경제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다. 독일의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반발하며 당시 합의에 반대하였으나, 장애인균등법의 새로운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대세에 결국 승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도 논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 질 것이다(남용현, 2002).

1) 고용 (Employment)

(1) 관련법안

1) 중증장애인의 실업퇴치를 위한 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SchwBAG)

2) 중증장애인법 (Schwerbehindertengesetz; SchwbG, SchwbG)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독일의 할당고용제는 우리나라 제도와 거의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 (Schwerbehinderte)이란 사회법전 제9권 1부 (Sozialgesetzbuch - Neuntes Buch - ; 이하 SGB IX) 제2조 2항에 의해 장애정도가 50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사회법전은 또한 준 중증장애인(Gleichgestellte)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준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30이상 ~ 50미만인 장애인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독일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어 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2000년 9월29일 “중증장애인의 실업퇴치를 위한 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SchwBAG)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증장애인법 (Schwerbehindertengesetz; SchwbG, SchwbG)이 새로이 개정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율 5%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원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채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채용 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작업장을 변경하는 일이 고용주에게 부과된 일반적 책임 중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모든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개별·개인적 차원에서 장애에 적합한 작업장의 개조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중증장애인이 특정작업장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종류나 장애정도로 인해 필요한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무소를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련기관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매우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으로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 연방노동청, 통합사무소, 통합전문가,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BBW, BFW, WfB) 등이 있다.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BMA)는 노동시장정책, 고용촉진, 각종 사회보험, 근로 보호, 사회부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BMA의 5국(局)에서 예방, 재활 그리고 장애인정책 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BMA에는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전권자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der Behinderter)가 있다. 이 전권자는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 혹은 장애인단체를 위해 연방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권자는 장애인들과 행정기관 그리고 재활수행기관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 다른 입장에 서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제거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전권자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도 1인씩 임명되어 있다. 연방노동청은 노동촉진법에 의해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 고용창출,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노동청은 일반 노동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노동청과 더불어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통합사무소이다. 통합사무소에서는 조정금의 징수와 사용, 해고보호, 근로생활에서의 보완적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의 일시적 취소 등 장애인을 직접 대면,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2)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1) 관련법안

1) 장애인의 균등에 관한 법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균등에 관한 법“에서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독일수화, 음성이 동반되는 수화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들을 통해 의사소통 할 권리가 있

음을 규정하고, 연방내무부가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와 합의하여 다음 사항들에 관한 법 시행령을 결정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①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들의 준비에 대한 청구의 허가 및 범위 / ②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들의 준비의 종류와 방법 / ③ 수화통역사 혹은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들의 필요경비 보상과 지불에 관한 원칙 / ④ 어떤 의사소통형태가 동조 제 1호의 다른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지원들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공공기관은 문서정보, 일반보수, 공법적 계약, 출판 등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들은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정보, 공법적 계약 및 출판물들에 대해 추가적 비용 없이 접근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내무부로 하여금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종류 및 방법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방법들을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장애인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내무부는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와 합의하여 적용될 기술표준 및 적용시점, 적용될 행정적 정보들의 영역 및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영업적 인터넷사이트 제공자들이 제품을 만들 경우 적절한 표준에 따라 만들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

(1) 관련법안

1) 장애인의 균등에 관한 법 (2002)

독일에서는 2002년 2월 28일 연방하원의 「노동 및 사회질서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균등에 관한 법”이 가결되어, 2002년 5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장애차별금지법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금지등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장벽제거(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 제8조에는 건축과 교통영역에서의 장벽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부

문의 신축,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공법상의 법인단체, 공단, 재단을 포함하여 대규모 개축 및 증축시에는 공인된 기술규정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의 건축 및 다른 시설들, 공공도로, 주차장, 공공교통시설 및 공공 대인교통축진수단 등은 연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장벽제거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2) 관련기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은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경우 장애인 인권에 관한 장애계의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니다.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운동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써 ‘교통액세스 전국행동’이 결성되었고, 1989년에 제1회 자립생활 문제연구 전국집회가 열렸으며, 1991년에 지적장애인 권리옹호센터가 개설되었으며, 이듬해부터 지적장애인의 당사자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주간보호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에야 비로서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해 11월에 ‘장애인 종합정보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 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의 참가를 촉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이 법의 제3조에서는 장애인은 개인의 존엄이 중시되고 그 존엄에 적합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를 근간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이래 장애와 관련된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이루어왔다. 즉, 각종 복지연금 및 수당의 도입과 더불어,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정신장

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병원서비스 중심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70년~1980년대 들어서 서비스 질의 확충, 즉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기초연금을 확립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의 다양화, 개별화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장애인종합지원법,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자립생활의 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옹호 운동의 전개, 시민 옴부즈맨 제도 등과 같이 당사자와 시민들의 감시를 강조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옹호시책추진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권옹호추진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UN) 10년’에 관한 국내 행동 계획을 책정하였고, 2000년에는 ‘인권옹호 시책 추진심의회’로부터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몽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5년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 연합(UN) 10년 추진본부」가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시 단위에서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2001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제안하여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이용권, 의료 및 재활서비스권 등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에 있어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도 평등하게 노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권리 등을 가질 것,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의 원인이 그 장애인의 개인적 속성에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국민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차별이나 천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을 포괄적¹⁷⁾으로 정의하고, 제2장 노동, 제3장 교육, 제4장 결격조항의 금지, 제5장 부동산, 제6장 교통·이동지원 시스템, 제7장 물건과 서비스, 제8장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제9장 참정권, 제10장 사법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1장에서는 법률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행정위원회(가칭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권과

17) 이 법안의 장애인의 정의는 ① 일정 기간의 정신적·지적 또는 신체적인 손상·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상태, ② 과거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③ 장래 일정 기간의 정신적·지적 또는 신체적인 손상·질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의해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개연성을 가진 사람도 장애인으로 본다.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권리, 채용에 관한 차별의 금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 합리적 배려의 의무, 또한 이에 관한 다른 권리자와의 조정, 의학적 검사(예: 신체검사)의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 국가시책의 목적, 차별의 추정, 최선의 권리, 보호자에게 부담이 없는 교육의 보장, 통합교육의 추진, 동일학적의 보장, 교육기관의 선택권, 특별한 요구의 보장, 통합교육 추진위원회의 설치, 대학 등 고등교육·전문교육의 보장을 정하고 있다. 한편 결격조항을 정한 규정의 무효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 면허 등의 부여를 거절 또는 박탈하는 등 제한적 법규정은 무효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거주, 이용할 권리,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불이익 행사 금지,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동의권자의 불이익 행사 금지, 부동산 형태의 변경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교통·이동지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업자의 설치의무, 사용자의 이용거부 금지, 장애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 및 지자체의 안내도우미 배치 의무, 지역사회적 종합적 정비 등을 정하고 있다.

물건과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은 상품, 시설,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며, 차별을 서비스 이용에서의 수화나, 점자, 음성서비스 편의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벽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에 있어서는 정보를 알고 전달할 권리,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광고의 의무, 설명의 의무, 재해의 공지 의무,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의무, 정보통신의 이용지원, 구제신청 등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에 있어서는 입법사항에 대한 알권리, 선거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에 있어서는 인권과 재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사법서비스의 제공기간의 합리적 배려 의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법의 지침이나 실무지침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법령 제·개정 에 대한 제언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 2001). 이와 같이 일본의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장애와 관련하여 별도의 관련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다. 주로 장애인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관련 문제를 다루는 곳은 법무성 인권옹호국이다. 인권옹호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 처리, 인권상담, 인권사상의 계몽활동, 법률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 담당기관으로서는 지방법무국의 인권옹호과가 있고, 지국의 경우에도 인권옹호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위촉된 자원봉사자인 인권옹호위원이 배치되어 있다.

1) 고용 (Employment)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본법(제15조), 장애인 등에 관계된 결격사유의 적정화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업생활에 있어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이로써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기본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또는 담당 부서에 관하여 장애인의 우선 고용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이 고용된 것에 수반하여 필요해지는 시설 또는 설비의 정비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조성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 등에 관계된 결격사유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는 수의사, 선원, 통역안내업, 가축개량증식업 등 특수 직종에의 장애인의 입직을 제한하는 차별조치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실격, 제한 등의 대상의 엄밀화, 절대적 실격으로부터 상대적 실격에의 개정, 장애인을 나타내는 규정에서 장애인을 규정하지 않는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2) 교육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인기본법’의 제12조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및 장애의 종류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 및 충실을 도모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환경의 정비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다.

3) 교통 (Transportation)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서는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 교통 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 배리어 프리 법)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의 편리성·안전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역 등의 여객시설 및 차량에 관하여, 공공교통사업자에 대한 무장벽환경(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다. 즉, 일정 지역에 있어, 시·읍·면이 작성한 기본구상에 근거하여, 여객시설, 주변의 도로, 역전광장 등의 무장벽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4) 주거 (Housing)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한 법률로서는 「고령자·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이 가능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장애인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정비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5)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기본법 제 22조의 3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히 정보를 이용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 및 방송의 역무의 이용에 관한 장애인의 편의의 증진, 장애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 시설의 정비 등이 도모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사업자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근거하고 해당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공공시설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마찬가지로 장애인기본법(제22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설치한 관공서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공공적 시설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7) 시설장애인

시설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기본법’ 제19조에서 필요한 전문적 직원과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갖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그 연령 및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르고 시설에의 입소 또는 그 이용에 의하고 적절한 보호와 의료, 생활지도, 기능회복훈련 그 밖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병원은 정신장애인을 입원시키는 경우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고 입원이 행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3-1> 장애인의 인권옹호의 전개와 동향

구분	서비스 양의 확대기 (1950~1960년대)	서비스 질과 보편화의 전개기 (1970 ~1980년대)	서비스의 다양화·개별화와 당사자·시민참가기 (1990~2000년대)
인권옹 호의 전개	다양한 집단의 권리 접근으로 향한 사회적 정치적 전개	개별 권리에 대해 누구나가 이 용하기 쉬운 공식·비공식의 권리 옹호 시스템의 전개	동료와 시민에 의한 인권옹호의 전개 및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의 전개
서비스 의 전개	서비스 수급권의 확대 와 서비스의 양의 확 대	서비스의 질의 보증을 향한 시 스템의 전개	개개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지원 계 획과 지원시스템의 전개
이념의 전개	· 엄격자격관리로부터 - 권리부여 - 생존권 보장 - 시설복지	- 표준화 - 자립 생활 - 지역 복지	· 임파워먼트 - 다른 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고지 에 입각한 동의와 사용자 통제(이용자 주도) - 본인 중심의 계획(PCP)과 본인지원 계획(IPP)
운동의 전개	· 소수민족, 여성, 장 애인 등의 공민권 운 동의 전개 - 가족과 전문화에 의한 복지시설 등의 요구 운동의 전개	·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 정책의 계획으로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 든 과정에 있어 당사자 참가 ·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립 생활 운동과 피플 퍼스트	· 다양한 자조모임(self-help) 활동과 그 지원 활동의 전개 · 당사자나 시민에 의한 각종 서비스 의 감시와 모니터 활동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그룹 에 대한 지역 시민의 자립 생활 지원 활동의 전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각국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관련법들이 다양하고 또한 담당 부서 또한 잘 확립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체로 구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강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법제화 노력이나 구체적인 추진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인권옹호의 측면에서 볼 때,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비스 양의 확대를 통해, 수급자격의 확대와 서비스 양의 확대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내실화와 보편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에 대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인권옹호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수급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에 의한 서비스가 강조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운동이 독립(자립)생활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들어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조되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맞게 된다. 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강조되는 역량강화(empowerment)와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과 감시 등이 필요하게 된 단계에서는 자조(self-help)집단이나 동료상담 등이 특히 강조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변화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ADA법, 재활법 등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움부즈맨 제도처럼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

6. 한국에의 시사점

외국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법률이나 정책, 기구 등은 장애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에서 이러한 시사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의 확립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선진국가들의 법률들은 대부분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된 내용들에 있어

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되거나 박탈되지 않을 것을 법의 기본철학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차별이나 인권에 대한 주장보다는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시혜적 자선이 필요한 집단으로써 장애인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경우 실제 장애아동의 출산문제, 여성장애인의 성 및 출산과 관련된 문제, 시설 및 교육에서의 자기결정권, 고용에서의 합리적 조정 등은 아직도 권리로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장애인 인권의 의미,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방안 등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의 재조명이 요구되어진다.

2) 장애차별금지에 대한 원리 규정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에 따른 차별은 사회적 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사회에서 이 차별의 불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법의 제정과 집행기준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는 해당시책이나 시설이 시민권을 보장해 주고 있거나 보장해 줄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판가름난다. 즉,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없는 것도 차별로 보아야 진정한 차별의 제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일상 생활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배척하는 각종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결국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의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긍정적 차별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유동철, 2002).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차별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피해의 구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적 의의를 갖게 되고, 차별 규제에서 차별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자료와 소송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

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차별에 관한 법규의 구체화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선진장애인 복지국가들의 경우 매우 구체적으로 장애차별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ADA는 합리적인 고용환경의 제공에서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의 개선, 업무의 재구조화, 업무시간의 조절, 검사도구, 훈련 및 교육교재, 정책의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수단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해결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4) 장애인 인권문제 전담 관련기구 설치

선진국가들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를 조사하거나 담당하는 관련기구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인권의 각 영역마다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 부서들은 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아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와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인데, EEOC는 ADA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의 실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조정 등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년 법에 의해 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을 전혀 할 수 없었음을 보았다. 이에 따라 1999년 위원회 법을 제정하여 조사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구체수단을 갖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인권 침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송하거나 항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으로서, 인권침해 당사자가 쉽게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룰 기구로는 미국의 경우 고용의 문제는 ‘기회평등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관련부처에서 다루고, 영국의 경우 조사 및 시정명령 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인권교육의 강화

외국의 경우 인권교육을 정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나 국가기구가 없으며, 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위에서 담당하거나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는 인권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인권교육기구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 교육은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6) 장애인 관련단체의 활성화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장애인 관련단체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각국의 법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국가에 의하여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집단적인 요구, 또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법안에 의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현재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대중의 참여와 함께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장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화에 따른 차별실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그 사람은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장애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은 약해지고, 그는 사회에서 더욱 소외될 것이다. 만약 문화적인 행사나 스포츠 활동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은 그 문화적 활동이나 스포츠에서 소외되게 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건물, 도로의 포장 등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약과 차별이 또 다른 장애를 만들고, 장애 문제를 심화시키며, 실제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많은 경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짐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등,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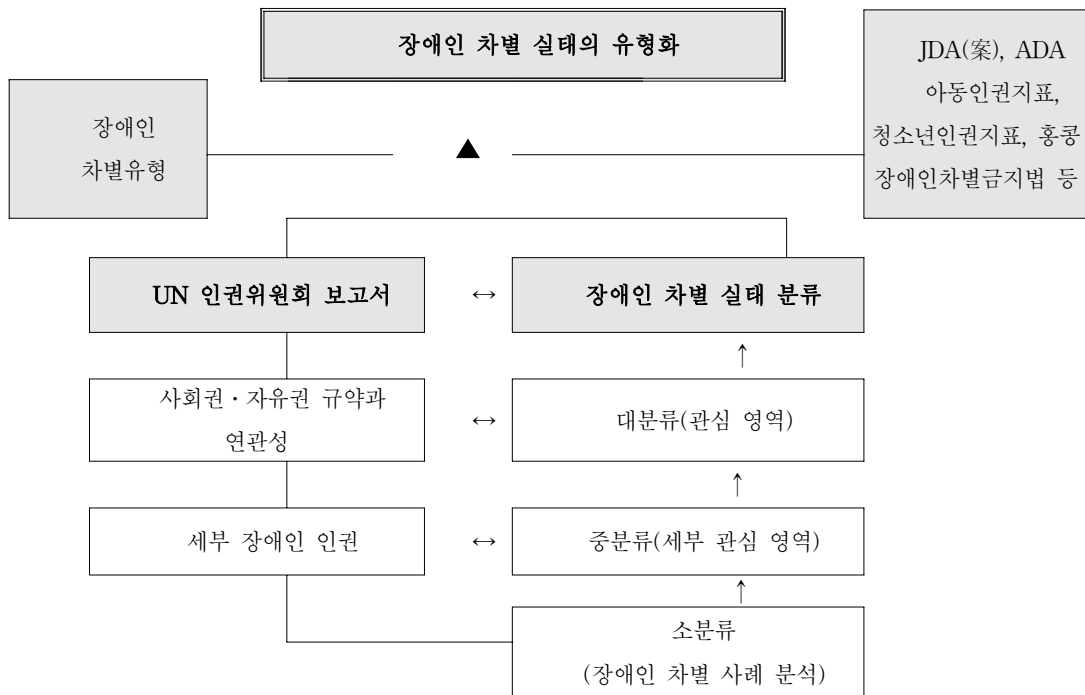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존재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볼 때, 장애인 인권 문제는 수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아예 숨겨져 버려, 노출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말하자면 지난 해 나타났던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이 올해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다음해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차별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장 차별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장애인 차별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 차별’의

실제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차별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권리, 여성장애인권리 등을 관심 영역(대 분류)과 세부 관심 영역(중 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제적인 차별 상황과 연결하여 명시화(소 분류)하여, 영역별·부문별 장애인 차별 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부문별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이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예방 또는 대응 방법 등을 알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작동되는 것이다. [그림 4-1]과 같이 장애인 차별 유형화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정을 진행했다.

[그림 4-1]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개발 과정¹⁸⁾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1. 내부자료)에서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2001 장애인 인권 침해유형조사’에 따른 결과 임. JDA는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ADA는 미국의 장애인법을 나타냄. UN인권위원회 보고서는 1991년 UN이 장애인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이의해석 번역한 것임

본 연구의 다음 과정은 마련된 장애인 차별 유형 체계에 실제로 일어난 장애인 차별 사례들을 대입시킴으로써, 실제로 일어난 장애인 차별이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각 영역별·부문별로 나타난 장애인 차별의 의미와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각 영역별·부문별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정책 개선, 인식 개선의 방향, 교육, 그리고 다양한 홍보 방안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 유형화’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일어난 장애인 차별 사례와 연결하여 어떤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왜 차별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장애인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성취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속에서 진행했다.

1. 장애인 차별의 유형화

이런 문제 의식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우선 차별 실태의 유형화를 위한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 ① UN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 보고서(이익섭 역, Human Rights and Disability, 1991),
- ② 일본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안)(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
- ③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 조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 ④ 미국의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⑤ 홍콩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 ⑥ 한국의 아동지표(이지연, 2001)¹⁹⁾
- ⑦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길은배, 2001) 등의 문헌을 비교·분석하여 관심영

19) 인권지표는 인권 상황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차별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와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인권지표는 차별의 유형화를 통해 그 항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을 유형화하는 본 연구를 수행함에 아동인권지표와 청소년인권지표 등을 활용한 것이다. 박옥순, 장애인인권지표개발연구, 한국사회의 장애인차별실태에 근거하여, 2002,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역(대 분류)의 항목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세부관심영역(중 분류)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세부관심영역(중 분류)을 토대로 하여 1977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뢰된 다양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와 동 기관에서 발행된 여러 문헌에 수록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반영된 내용들을 수집하여 실제적인 장애인 차별의 항목(소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는 서울·경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아래의 자료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 대상은

- ① 1996년~2001년 장애인 차별 상담 사례집(363건)
- ② 장애우 상담지기 길라잡이(12건)
- ③ 한국사회의 장애우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34건)
- ④ 각종 공채 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 인권 토론회 자료집(20건)
- ⑤ 상담 사례 연구 자료집(25건)
- ⑥ 2001~2002년 11월 현재 장애인전화(1588-0420) 상담일지(389건)
- ⑦ 각종 언론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포함하여 총 843건의 수집된 인권 침해 사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장애인 차별 유형화의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아동지표와 청소년 인권지표, 그리고 UN인권위원회 보고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조사,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 이하 JDA案),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동인권지표(이재연, 2001)는 사회 지표 체계를 활용하였고, 청소년인권지표(길은배, 2001)도 사회지표 체계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VII 장의 ‘시민권과 자유’, VIII장의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등의 두 가지 분야에서만 인권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 아동인권지표의 대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보장, 경제,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등이고 청소년인권지표는 인구, 건강과 생존, 가족,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보장, 시민권과 자유권, 사회적 약자 청소년의 권리 등으로 유형화를 하여 ‘인권 침해’ 또는 ‘차별’ 실태

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분류 체계를 위한 연구 모델로는 활용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하였다.

UN 인권 위원회의 장애인 인권 보고서(이하 UN인권위원회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자유권 규약)과 장애인의 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했으며, 장애인 인권을 세분화하여, 본 연구의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의 대 분류 과정에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특히 사회권에 관한 권리로 노동권, 여성장애인의 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자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 이유로 차별 금지, 장애인지원서비스, 형사상의 권리, 시설장애인의 권리, 가족생활권, 참정권 등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들을 크게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유형화의 대 분류와 중 분류 항목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표 4-1> UN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보고서’의 장애차별 분류

인권 규약	대분류	중분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	노동권	노동의 기회 / 노동환경 / 적절한 보수 보장
	여성장애인의 권리	산전, 산후 특별 보호 / 임신 중 보호
	생존권	생계 유지
	건강권	영양실조 조치 / 적절한 치료 / 재활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생활 환경 / 장애예방 / 불결한 시설 개선
	교육권	공립학교 취학 / 공립학교 편의시설 /필요시 특수교육제공
	문화향유권	문화 공간 편의시설 / 참여능력 편견 해소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장애 이유로 차별금지	장애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장애인 지원서비스	인권침해 대응 지원 특별 조치
	형사상의 권리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체포 방지 / 체포시 사유를 알 권리/ 의사소통의 문제로 체포 방지
	시설장애인의 권리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권
	가족생활권	정신(지체)장애인의 결혼권/결혼·가정형성의 권리/강제불임 방지
	참정권	정신(지체)장애인 투표권 / 시각장애인 투표권 / 투표소 접근권 / 대민 봉사직 기회 제한

그러나 UN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 보고서’의 차별 유형은 <표 4-1>과 같이 중 분류(세부 관심 영역)에 국한하였고, 대 분류 중에서 접근권과 소비자의 권리가 빠져 있으며, 중 분류도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또한 중 분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소 분류, 즉 구체항목은 아예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차별 유형화의 소분류 항목을 구성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주요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하되, 여타의 다른 문헌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대 분류와 중 분류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나라의 법안들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2002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안(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²⁰은 10개 항목이 전반적으로 UN인권위원회 보고서의 항목과 유사하여 본 연구에 실제적 도움이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의 ‘장애 이유로 차별금지’라는 선언적 의미의 항목을 복지관 등에서의 프로그램 이용 등을 명시한 이용권(문화향유권 포함)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고, 접근권과 정보 접근권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민·형사상의 권리를 포함한 사법권으로 포괄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 인권 지표의 대분류에 접근권, 정보 접근권, 소비자 권리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림 4-2]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장애 차별 분류

항 목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세부 내용
1. 이용권	1.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장애 이유로 거부되는 것 2. 장애 이유로 특별한 이용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것 3. 장애 이유로 서비스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 4. 장애 이유로 이용수단, 입수 방법, 가격 선택을 제한하는 것 5. 환경 때문에 장애 개인의 능력을 초과한 동작이 요구되는 것 6. 장애인의 주체성이 무시된 원조를 받지 않는 것

20) 障害者政策研究全國集會實行委員會 政策研 (障害者差別禁止法作業チーム), 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 2001.

항 목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세부 내용
2. 의료 및 재활서비스권	7.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8. 인간의 존엄성 손상과 차별 조장의 위험이 있는 생식기 시술 등의 의료 기술 → 9. 기초적인 기능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 10.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의 카운슬링을 받을 수 없는 것 11. 자기 신뢰를 향한 Empowerment를 평가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3. 지원 서비스	12.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 13. 장애를 가진 사람의 요구에 따라 개조, 점역, 수화통역, 요약필기, 보장구, 일상생활 용구 등의 서비스 중 지원 받지 않는 것
4. 접근권	14.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14-1. 입주 시 부당하게 장애인을 선별하는 것 14-2. 입주 후에도 장애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지내지 못한 경우 15.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 15-1. 장애 없는 사람과 평등한 이동 수단 및 경로가 아닌 경우 15-2. 개별 요구에 따라 적절한 배려가 없는 경우 16.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 16-1.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접근이 안되는 경우 16-2.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보 보장권	17. 모든 언론 매체 등의 정보를 장애인의 이용이나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 18. 인쇄물은 점자, 음역을 얹은 경우 → 19. 음성은 문자 변환 혹은 수화 번역이 없는 경우 20. 영상이나 화상은 음성이나 촉각으로 번역이 안된 경우 21. 문장은 평이한 용어나 문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6. 교육권	22.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3. 교육 지원 제공에 있어 장애인과 그 가족과 협의 또는 합의하지 않는 경우 → 24. 이의 신청이나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25.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 교육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노동권	26. 스스로의 적성에 의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곳에서 일할 권리 침해 27.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동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권리 침해 28. 직업선택, 직업상담, 직장알선 등에 지원 받을 권리 침해 → 29. 노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지원 받을 권리 침해 30. 장애를 이유로 노동에 있어서 차별 금지 31. 전체 사회구성원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

항 목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세부 내용
8.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32. 적절한 경제력으로 만족스런 생활을 유지할 권리 침해 33. 스스로 수입과 지출에 관계하고 이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 34. 장애를 가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제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9. 시설	35. 지역 내 자립생활 불가능자가 입소한 거주형 시설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거주자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 36.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시설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10. 사법	38. 모든 사법 관련 기관과 행정절차에서 모든 장애인의 감각 기능을 지원하는 보조자를 이용하는 권리를 침해 → 40. 정신(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증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 41. 장애인의 필요에 의해 보장구를 사용할 권리 침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①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② 공공서비스에서의 차별 ③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과 서비스 ④ 전기통신 ⑤ 세부규정 등 5개 분야²¹⁾로 구성되어, 각 분야에 대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장애인 인권 침해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 각 영역과 부문의 유형화 체계를 구성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영역이 문화, 교육, 여성장애인 등에 관한 언급이 없이 5가지로 제한적이어서 이번 유형화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는 참조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홍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은 총 9장²²⁾으로 되었으며, 장애인 고용, 교육, 폭력 등에 관해서만 차별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대분류 및 중분류 연구에는 참조하고,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 조사는 <표 4-2>와 같이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 침

21) ① 고용(prohibits discrimination employment) ② 공공서비스(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public entities) ③ 사설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서비스(prohibits discrimination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transportation provided by private entities) ④ 전기통신(prohibits discrimina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 ⑤ 세부규정 (Miscellaneous provisions),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ttp://www.usdoj.gov/crt/ada/adahom1.htm>.

22) 총칙, 본 법상의 차별, 고용의 차별과 학대, 기구의 차별, 교육 등에서 차별, 기타 위법 행위, 일반적 적용 제외, 위원회, 집행, 잡칙 등으로 나눔, 송영욱, 이익섭 공역, 한국어·태장애인10년연구모임, 1998.

해 경험(7개)과 사회 생활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7개)으로 크게 분류하여 총 14개의 대 항목을 구성했다.

<표 4-2> 장애인 인권 침해 유형(한국장총, 2001)

구분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	사회생활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
1	생활환경권	직업생활 및 노동권
2	주거생활권	교육 및 학습권
3	의료수급권	공공서비스 수급권
4	가족생활권	선거 및 참정권
5	문화·체육생활권	소비자 권리
6	폭 력	정보 이용 및 접근권
7	개인적인 인권 침해 경험	사회생활의 인권 침해 경험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와 유사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근접한 내용으로 상당부분에서 UN인권위원회 보고서와 부합되는 내용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와 폭력이라는 항목이 이목을 끌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노동권’, ‘여성장애인의 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접근권’, ‘정보접근권’, ‘지원서비스’으로 유형화하였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형사상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의 권리’,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등으로 대분류를 확정하였다. 중분류는 「UN인권위원회」의 12개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 항목과 「일본의 차별금지법안」의 10개 대분류 항목에 따른 중분류, 그리고 한국장총의 「장애인 차별 유형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16개의 대분류를 통해, 노동권 3개와, 여성장애인의 권리 3개, 생존권 1개, 건강권 2개, 교육권 2개, 문화향유권 1개, 접근권 3개, 정보접근권 2개, 지원서비스 3개, 형사상의 권리 2개, 생활시설 장애인권리 4개, 가족권 2개, 참정권 2개, 소비자권리 3개, 재산권 1개 등 35개의 중분류, 1116개의 소분류 체계로 장애인 차별 유형화를 <표 4-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3> 장애인 차별 유형화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1.노동권	(1)노동기회차별	1)취업기회제한
		2)면접시탈락
		3)모집공고제한
		4)부당해고
		5)직업훈련제한
		6)원서접수거부
		7)적절한시험환경부재
	(2)노동환경차별	8)적절한직무환경및업무배치차별
		9)다른동료에비해승진차별
		10)중도장애로복직연기
		11)장애로퇴직강요
		12)직장내인간관계에서차별
		13)다른동료에비해임금체불
		14)다른동료에비해저임금
	(3)산재보상차별	15)보상시장애인차별
		16)산재인정차별
2. 여성장애인권리	(4)모성권차별	17)산전후조리차별
		18)장애이유로양육권침해
		19)낙태강요
	(5)성차별	20)여성장애를이유로재산권침해
		21)여성장애를이유로교육기회침해
		22)여성장애를이유로노동기회침해
	(6)폭력	23)가정내성폭력
		24)성폭력
		25)가정폭력
		26)폭력
3. 생존권	(7)생계유지권리차별	27)생활고
		28)생계유지수단제한
4. 건강권	(8)진료권차별	29)진료계획참여및알권리침해
		30)건강에대한교육받을권리침해
		31)병의원진료거부
		32)서비스기관부재
	(9)적절한치료권 차별	33)수술비필요
		34)진료비필요
		35)간병제도미비
		36)의료재활치료필요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5. 교육권	(10)교육기회차별	37)취학기회박탈
		38)모집요강제한
		39)연령제한
		40)원서접수거부
		41)편입학거부
		42)교육기관부재
		43)진학거부및강요
	(11)교육환경차별	44)편의시설미비
		45)학급내인간관계차별
		46)통합교육거부
		47)교육프로그램참여거부
		48)적절한시험환경부재
		49)학습도우미필요
		50)수화점역교재등필요
51)교육비지원		
6. 문화향유권	(12)참여권차별	52)참여제한
		53)문화공간편의시설미비
		54)문화비용필요
7. 접근권	(13)이동권차별	55)교통시설제한
		56)도로환경제한
		57)편의시설미비
		58)안내표지판및방송등미비
	(14)건축물접근권차별	59)건축물편의시설미비
		60)주차제한
	(15)거주이주권차별	61)지역주민거부
		62)거주이주권침해
8. 정보접근권	(16)정보접근차별	63)장애인복지시책접근제한
		64)상담및서비스기관문의
		65)법률상담및자문
		66)장애인등록절차및혜택
		67)기타
	(17)정보매체접근차별	68)수화및자막서비스제한
		69)점자및음성서비스제한
		70)컴퓨터이용권제한
		71)상징적그림서비스제한
9. 지원서비스	(18)비용지원차별	72)이동비용지원필요
		73)양육비용지원필요
		74)의료비용지원필요
		75)용자지원필요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19)도우미지원차별	76)심리상담필요
		77)이동도우미필요
		78)가정도우미필요
		79)수화점역등필요
	(20)보장구사용권차별	80)보장구구매및수리비용필요
		81)보장구품목제한
10. 참정권	(21)선거권차별	82)투표권침해
	(22)선거접근권차별	83)선거정보접근권침해 84)투표소접근권침해
11. 소비자권리	(23)보험금융사용권차별	85)보험가입제한
		86)보상금제한
	(24)구매권차별	87)음식점등서비스기관출입제한
		88)구매제한
		89)불친절및무시
(25)행정접근권차별	90)행정접근제한	
12. 형사상권리	(26)법절차위반	91)불법체포
		92)자백강요
	(27)피해자로서권리침해	93)의사소통제한으로수사미진
		94)진술의신빙성불인정
13. 시설장애인권리	(28)사생활권차별	95)자기결정권침해
		96)사생활권리침해
	(29)폭력	97)심리및언어폭력
		98)폭력
		99)성폭력
	(30)적절한서비스수익차별	100)적절한서비스받을권리침해
(31)거주이주권차별	101)거주이주권리침해	
14. 가족권	(32)결혼할 권리차별	102)장애이유로결혼반대
		103)결혼제한
		104)자기결정권침해
	(33)가족생활권차별	105)가정폭력
		106)가정내성폭력
		107)장애로이혼별거
		108)가족입의시설입소추진
109)장애인녀출산으로이혼		
15. 신체자유권리	(34)폭력	110)심리및언어폭력
		111)폭력
		112)성폭력
		113)누명
16. 재산권	(35)재산상불이익	114)사기
		115)절취및갈취
		116)상속권제한

2. 차별 실태의 일반적인 현황

1) 연도별 빈도 분석

연도별 차별 실태 현황에 따르면 총 843건 중 1999년 이전에 46건, 2000년에는 153건, 2001년 185건, 2002년에는 459건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상담은 1995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의 상담 기관에 1999년부터 ‘장애우 인권센터’라는 상담 전문 행정 기구가 설치되어, 다양한 형태의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것과 상담 사례를 제대로 관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상담 기관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이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상담 내용들은 거의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의식, 즉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상담 내용도 개인의 문제에서 정책의 허와 실을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상담도 다수 있다. 이는 장애인올림픽(1988) 이후 장애 운동의 결과로 장애인 관련된 법·제도가 제·개정되고, 이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 의식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표 4-4> 연도별 접수사례

구 분	빈 도	%
1999년 이전	46	5.5
2000년	153	18.1
2001년	185	21.9
2002년	459	54.4
합계	843	100.0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화(1588-0420)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전화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

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일반 장애를 가진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본적인 정보 문의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등의 상담을 장애인 전화를 통해 의뢰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상담 사례의 일부가 장애인 전화로 의뢰된 상담이다.

2) 성별 빈도 분석

인권 침해 상담을 의뢰한 내용을 성별로 보자면 남성이 545명으로 64.7%를 나타내며, 여성이 298명으로 35.3%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문제를 알리는 데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를 여성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표 4-5> 성별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남	545	64.7
여	298	35.3
합계	843	100.0

여성이 인권 침해 상담을 의뢰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반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장애유형별 빈도 분석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87(69.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정신지체 105명, 시각장애 84명, 청각·언어장애 38명, 정신장애 15명, 내부장애 8명, 기타 비등록 장애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등록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안면 장애 혹은 화상으로 인한 장애, 암 환자 등이 해당되며 이들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4-6> 장애유형별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지체장애	587	69.6
시각장애	84	10.0
청각언어장애	38	4.5
정신지체	105	12.5
정신장애	15	1.8
내부장애	8	.9
비등록장애	6	.7
합계	843	100.0

4) 상담 의뢰자가 누구인가

본 연구에 사용된 인권 침해에 상담을 의뢰한 사람의 구분을 살펴보면 자신 스스로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709명으로 84.1%나 차지했다. 가족 등에 의한 상담 의뢰는 113명, 이웃 등에 의한 것은 총 21건이다.

<표 4-7> 상담 의뢰자

구분	빈도	퍼센트
본인	709	84.1
가족	113	13.4
이웃 등	21	2.5
합계	843	100.0

앞서 언급된 내용대로 이미 인권 주제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가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고조되면서 본인 스스로의 상담을 의뢰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5) 장애, 그 자체가 차별의 대상인가?

아무런 이유나 원인이 없는데, 정말 순수하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례가 843건 중에서 127건으로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술 취한 행인에게 불편하게 걷는다며 폭행을 당한 경우, 학교에서 놀림 당하고 구타당하는 경우, 뇌병변장애인이 114에 문의전화를 했는데, 더듬거리며 목소리 흉내낸 다음 끝

어버린 경우, 몸이 불편한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결혼 예단을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호프집에서 거절당한 뇌병변 장애 대학생, 목발에 세균 감염이 우려된다며 치료를 거부하는 치과병원, 다른 형제에게는 유산 상속이 되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유산 상속을 제한하는 경우, 체육 시간에 혼자서 교실을 지키다가 도둑으로 몰린 지체 학생 등의 경우를 말한다.

<표 4-8>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학대

구분	빈도	퍼센트
아니오	716	84.9
예	127	15.1
합계	843	100.0

다른 인권 침해 사례도 모두 장애가 이유가 되지만, 특별히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그야말로 ‘장애’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이다. 이런 사례에 직면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처구니없기도 하지만, 삶의 의미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로 나타난다.

안면장애나 화상장애, 암, 희귀병 등 기존 장애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은 장애에 대해 범주 확대를 요구하는 문의가 총 10여건이 접수됐고, 이들은 주로 자신의 병이나 장애가 장애인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랬을 때 장애 등록 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책, 특히 병원 진료비나 치료비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한편 산업재해 등 중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 즉 노동권, 생존권, 가족권 등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36건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노동권 문제는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어 복직이 안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아예 해고 조치를 당하는 심각한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를 말하고,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도장애인의 경우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방안 등을 묻는 등의 생존권 침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도에 장애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혼을 요구 당하고 양육권포기를 요구받는 등의 가족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다.

6) 차별의 악순환

한편 장애인 차별 실태를 분석하면서 예컨대 장애를 이유로 교육 차별에 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노동에서의 차별을 겪게 되고, 이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이른바 차별의 악순환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차별 유형화의 대분류에 근거하여 차별의 연장선을 찾아내는 연구를 통해, 한 사례당 1가지의 차별 유형을 갖고 있는 경우는 총 602개, 2가지 이상의 차별 유형을 보이는 것은 221개, 그리고 3가지 차별 유형은 20개에 해당되고 있었다.

<표 4-9> 장애차별의 중복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1가지 차별유형	602	71.4
2가지 중복 차별유형	221	26.2
3가지 이상 중복 차별유형	20	2.4
합계	843	100.0

장애 차별의 시작은 주로 교육권, 가족권, 정보접근권 침해에서 출발하여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적인 차별 유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접근권은 112개, 가족권은 43개, 지원서비스 25개, 생존권은 22개, 여성장애인은 15개, 노동권은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도에 장애(실명)를 가지자,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대해줬던 남편이 점점 폭행을 일삼고,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이어서 겪게 되는 생존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이른바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이어, 가족이 해체되는 가족권 침해와 그리고 생존권 침해로 이어지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차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게 되어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여성이 노동할 기회도 갖지 못하면서, 부모가 죽게 되자 생존의 문제에 처하게 되는 사례 등도 이런 예에 속한다. 또 하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일반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접근권 침해에 교육권 침해 등으로 이어진다. 즉 장애를 이유로 하나의 차별이 일어나면 반드시 다른 유형의 차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차별의 악순환’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7) 사회권과 자유권에 대한 장애차별 빈도 분석

위의 도표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장애인 차별 실태 총 843건을 수집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구분하여, 장애인 차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는 노동권, 여성장애인의 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접근권, 정보접근권, 지원 서비스 등으로 총 569건(67.5%)에 해당된다.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형사상의 권리, 시설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의 권리,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등 총 274건(32.5%)으로 집계됐다. 각 유형에 따른 권리의 개념과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현실을 살펴보자.

<표 4-10> 사회권과 자유권별 장애차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합 계	569	67.5	합 계	274	32.5
노동권	140	16.6	형사상권리	12	1.4
여성장애인권리	68	8.1	시설장애인권리	8	.9
생존권	47	5.6	가족권	73	8.7
건강권	26	3.1	참정권	7	0.8
교육권	48	5.7	소비자권리	79	9.4
문화향유권	11	1.3	신체자유권리	30	3.6
접근권	25	3.0	재산권	65	7.7
정보접근권	116	13.8			
지원서비스	88	10.4			

먼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 침해 실태를 살펴보자. 노동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면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하여 아예 노동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노동의 기회, 다른 동료 직원에 비해 저임금이거나 혹은 직원들의 따돌림 등을 표현하는 노동환경, 노동하는 도중에 산재를 당했을 경우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거나 기왕력에 의한 보상금 차별 등을 포함하여 산재 보상 등으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 실업률이 26.7%(2001년 현재)라는 기초적인 수준에 노동권조차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펴본 장애인 노동권 침해에 관련하여 수집된 차별 건수만 해도 140건으로 본 연구를 위한 수집된 인권 침해 사례 중 2위를 차지한다. 교육받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결국은 일 또는 노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노동권 침해에 관한 상담 사례가 많이 수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장애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갖게 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차별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안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고, 여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다양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권리 침해에 속하는 차별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전체 843건 중 8.1%를 차지하고 있다. 흔히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장애 문제도 복잡하고 힘든데 웬 여성장애인인가’라는 항변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68건의 차별 실태를 살펴볼 때 간과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이유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주로 성차별, 모성권 차별, 그리고 폭력적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권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생존권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를 해소할 권리를 이른다. 먹고 살 길을 찾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호소는 우리 사회의 작고 그늘진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총 47건으로 5.6%를 차지한다. 생존권 문제는 교육 차별에서 노동 차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생존에 문제 직면하게 되는 장애인 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하게 해주고 있다.

건강권은 ‘의약분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개념이다. 건강권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말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 건강권은 생명과도 같은 권리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흔히 질병 또는 그 장애 자체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사례를 봤을 때, 진료 계획에 참여할 권리, 또는 교육받을 권리,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차별 사례가 26건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권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을 거부하거나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하는 등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거나,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편의시설 미비 또는 통합교육 거부 등으로 차별을 당하는 교육환경 문제 등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총 48건으로 5.7%를 차지하는 교육권 침해는 노동권 침해와 아울러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문화향유권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아예 참여를 거부하거나 문화 공간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문화향유권을 차별 받는 경우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11건이 수집됐다.

접근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시공을 초월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25건으로 3.0%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례를 제공한 기관이 장애인 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가를 포진하여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 상담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접근권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동권 및 접근권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동문제 또는 건물 접근에 관한 상담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접근권은 총 116건으로 13.8%를 나타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와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지원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지원 내용을 권리로서 개념화시킨 것이다. 지원서비스에 관한 권리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추가되어야 할 비용, 즉 이동비용, 양육비용, 의료비용 등의 비용지원과 이동도우미, 가정보우미 등 도우미 지원, 그리고 보장구 등에 관한 권리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총 88건으로 10.4%이다.

다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형사상의 권리와 시설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권리,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접근권,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형사상의 권리는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자기표현력이 없는 사람들이 형사상의 관

계에서 차별적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해소할 권리를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형사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례는 주로 정신지체인과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거나, 정신지체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1.2%에 해당된다. 아주 적은 사례가 수집되었지만,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1-2주일 이상씩 인신이 구속되는 사례를 볼 때는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시설장애인의 권리는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 내에 수용되어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주이주 권리’가 완전히 무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나 폭력 등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큰 인권 침해로 인정돼야 한다. 시설장애인 권리 침해로는 총 8건이 접수됐다.

가족권은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살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거나 가정 내의 폭력이나 성폭력, 장애로 이혼을 당하거나 가족 임의로 시설 입소가 추진되는 등 가족생활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등의 권리 침해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장애로 인해 결혼을 반대하거나 아예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례 등 총 73건(8.7%)이 접수됐다.

참정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 침해는 편의시설 미피 등으로 투표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와 선거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또는 아예 투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등 총 7건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로서 당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일컫는다. 이 권리 침해는 크게 음식점 등 서비스 기관 출입이 제한되거나 구매를 제한하는 것, 또는 불친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등 구매권 침해에 관한 것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상황에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와 보험 금융사용권을 제한 받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 79건(9.4%)이 접수되었다.

신체자유권리는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살 권리를 말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편하게 걷는다거나,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폭력과 무시, 성폭력, 누명 등으로 신체 자유를 구속당하는 사례들이 총 30건이나 되었다.

재산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재산권 문제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

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사기 또는 절취·갈취를 당하는 경우 등 총 65건이 접수됐다.

8) 장애 유형별 사회권·자유권별 빈도 분석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사회권 침해가 68.8%, 자유권 침해가 31.2%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회권 침해가 79.8%, 자유권 침해가 20.2%로 나타났다.

<표 4-11> 장애유형별 사회권·자유권 차별

구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언어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내부 장애	비등록 장애	
사회권	빈도	404	67	28	51	6	8	5	569
	%	68.8%	79.8%	73.7%	48.6%	40.0%	100.0%	83.3%	67.5%
자유권	빈도	183	17	10	54	9		1	274
	%	31.2%	20.2%	26.3%	51.4%	60.0%		16.7%	32.5%
전체	빈도	587	84	38	105	15	8	6	84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각, 언어 장애인의 경우 사회권 침해가 73.7%, 자유권 침해가 26.3%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사회권 침해가 48.6%, 자유권 침해가 51.4%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권 침해가 40.0%, 자유권 침해가 60.0로 나타났다. 즉, 지체, 시각, 청각언어 등 신체적 장애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노동권, 정보접근권과 같은 사회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했으며,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의 자의에 의한 입소와 같은 자기결정권 침해, 신체상의 폭력 등과 같은 자유권의 침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노동시장 진입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사회인식 개선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시설입소 시 자기 선택권의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9) 장애 유형별로 살펴본 영역별 인권 침해 빈도 분석

<표 4-12>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영역 분포

구분		장애유형							전체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언어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내부 장애	비등록 장애		
대 분 류 ¹	가족권	빈도	43	1	4	19	6			73
		%	7.3%	1.2%	10.5%	18.1%	40.0%			8.7%
	건강권	빈도	20		1	3		1	1	26
		%	3.4%		2.6%	2.9%		12.5%	16.7%	3.1%
	교육권	빈도	16	10	3	18	1			48
		%	2.7%	11.9%	7.9%	17.1%	6.7%			5.7%
	노동권	빈도	97	21	11	3	3	3	2	140
		%	16.5%	25.0%	28.9%	2.9%	20.0%	37.5%	33.3%	16.6%
	문화 향유권	빈도	8			2	1			11
		%	1.4%			1.9%	6.7%			1.3%
	생존권	빈도	45	1		1				47
		%	7.7%	1.2%		1.0%				5.6%
	소비자 권리	빈도	57	6	3	12			1	79
		%	9.7%	7.1%	7.9%	11.4%			16.7%	9.4%
	시설장애 인권리	빈도	7			1				8
		%	1.2%			1.0%				0.9%
	신체 자유권리	빈도	16	2		11	1			30
		%	2.7%	2.4%		10.5%	6.7%			3.6%
	여성장애 인권리	빈도	38	3	6	20	1			68
		%	6.5%	3.6%	15.8%	19.0%	6.7%			8.1%
재산권	빈도	51	6	1	5	2			65	
	%	8.7%	7.1%	2.6%	4.8%	13.3%			7.7%	
접근권	빈도	21	2		1		1		25	
	%	3.6%	2.4%		1.0%		12.5%		3.0%	
지원 서비스	빈도	75	9	2	2				88	
	%	12.8%	10.7%	5.3%	1.9%				10.4%	
참정권	빈도	4	2		1				7	
	%	.7%	2.4%		1.0%				0.8%	
형사상 권리	빈도	5		2	5				12	
	%	.9%		5.3%	4.8%				1.4%	
정보 접근권	빈도	84	21	5	1		3	2	116	
	%	14.3%	25.0%	13.2%	1.0%		37.5%	33.3%	13.8%	
전체	빈도	587	84	38	105	15	8	6	84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로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노동권 침해

해 16.5%, 정보접근권 침해 14.3%, 지원서비스 미비 12.8%, 소비자 권리 침해 9.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체장애인의 경우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사회환경에 있어서의 차별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노동권 차별 25.0%, 정보접근권 침해 25.0%, 교육권 차별 11.9%, 지원서비스 미비 10.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권에 대한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수단을 조속히 강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노동권 침해 28.9%, 여성장애인 권리 침해 15.8%, 정보접근권 침해 13.2%, 가족권 차별 10.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침해가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 권리 침해가 높게 나타났는데, 성폭력, 가정 폭력 등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 언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접근권 침해도 1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의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 권리 침해 19.0%, 가족권 차별 18.1%, 교육권 차별 17.1%, 소비자 권리 침해 11.4%, 신체자유권리 침해 10.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권의 차별이 17.1%로 타 장애영역에 비해 많았으며, 교육권 차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노동권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노동권의 차별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자유권리의 침해도 타 장애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정신지체의 경우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권 차별 40.0%, 노동권 침해 20.0%, 재산권 차별 1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권 차별이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장 많았는데 가정폭력, 가족 임의로 시설에의 입소 추진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는 가족이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에 입소시켜 가족이 장애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시설입소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자기결정에 의한 입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산권 차별도 타 장애영역에 비해 많았는데,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상속 및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차별이 많음을 보여준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교육, 사회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성별로 살펴본 영역별 인권 침해 빈도 분석

성별에 따른 차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노동권 차별 20.4%, 정보 접근권 차별 13.4%, 지원서비스 미비 10.5%, 소비자권리 침해 9.9%, 재산권 차별 8.8%, 가족권 침해 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 성별 차별영역 분포

구분		성별		전체	
		남	여		
대분류	가족권	빈도	45	28	73
		성별의 %	8.3%	9.4%	8.7%
	건강권	빈도	19	7	26
		성별의 %	3.5%	2.3%	3.1%
	교육권	빈도	31	17	48
		성별의 %	5.7%	5.7%	5.7%
	노동권	빈도	111	29	140
		성별의 %	20.4%	9.7%	16.6%
	문화향유권	빈도	9	2	11
		성별의 %	1.7%	.7%	1.3%
	생존권	빈도	33	14	47
		성별의 %	6.1%	4.7%	5.6%
	소비자권리	빈도	54	25	79
		성별의 %	9.9%	8.4%	9.4%
	시설장애인권리	빈도	6	2	8
		성별의 %	1.1%	0.7%	0.9%
	신체자유권리	빈도	27	3	30
		성별의 %	5.0%	1.0%	3.6%
	여성장애인권리	빈도	-	68	68
		성별의 %	-	22.7%	8.1%
재산권	빈도	48	17	65	
	성별의 %	8.8%	5.7%	7.7%	
접근권	빈도	14	11	25	
	성별의 %	2.6%	3.7%	3.0%	
지원서비스	빈도	57	31	88	
	성별의 %	10.5%	10.4%	10.4%	
참정권	빈도	5	2	7	
	성별의 %	0.9%	0.7%	0.8%	
형사상권리	빈도	12	-	12	
	성별의 %	2.2%	-	1.4%	
정보접근권	빈도	73	43	116	
	성별의 %	13.4%	14.4%	13.8%	
전체	빈도	544	299	843	
	성별의 %	100.0%	100.0%	100.0%	

그리고 여성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 22.7%, 정보접근권 차별 14.4%, 지원서비스 미비 10.4%, 노동권 차별 9.7%, 가족권 침해 9.4%, 소비자권리 침해 8.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 중 1/5을 노동권 차별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필요성 및 사회적 관념에 따라 노동시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진입이 어렵고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환경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 노동권 차별은 9.7%로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환경 및 여성의 취업도 제한되는 사회환경에서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는 아직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일 뿐 남녀장애인 모두 노동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2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주요 차별 내용이 양육권 침해,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권, 지원서비스, 소비자권리, 재산권, 가족권의 침해는 남녀 장애인 모두 침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권리의 침해는 성별에 따른 대처보다는 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리침해로 보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 차별 유형화에 따른 차별 실태

1) 노동권

노동권 침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 침해 호소를 가장 많이 한 분야로, 수집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총 843건 중 140건으로 16.6%로 나타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에 관한 큰 관심의 정도를 나타냈다. 노동권 침해는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노동기회차별과 노동환경차별, 산재 보상 차별 등으로 증분류 하였다.

<표 4-14> 노동권의 침해

노동권(843건 중 140건으로 16.6%)		140(건)	100.0(%)
노동기회 차별	취업기회제한	57	40.7
	면접시탈락	7	5.0
	모집공고제한	2	1.4
	부당해고	5	3.6
	직업훈련제한	6	4.3
	원서접수거부	2	1.4
	적절한시험환경부재	1	.7
	소계	80	57.1
노동환경 차별	적절한직무환경및업무배치차별	1	.7
	다른동료에비해승진차별	1	.7
	중도장애로복직연기	4	2.9
	장애로퇴직강요	11	7.9
	직장내인간관계에서차별	5	3.6
	다른동료에비해임금체불	21	15.0
	다른동료에비해저임금	5	3.6
소계	48	34.3	
산재·보상 차별	보상시장애인차별	4	2.9
	산재인정차별	8	5.7
	소계	12	8.6

가. 노동기회 차별

가) 취업기회 제한

노동기회 차별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요청한 내용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총 57건으로 140건의 노동권 침해 사례 중 40.7%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실업률 2.7%(2002, 11월 현재)에 비해 장애인 실업율은 26.7%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 실업 문제의 핵심은 한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례 건수가 7건이나 되는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망 실업 상태를 문제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장애인의 노동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2%의 의무고용제도가 있으나, 아직도 0.46%(2001년 6월 현재)에 그치고 있고, 기업들은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로 면죄를 하고 있는 것도 장애인 실망 실업을 부추기는 이유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2~5%의 의무고용제도가 있으나, 고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 그 고용율이 겨우 1.15%인 상

태다.

더구나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 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차별하고 있어,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실망 실업 상태에 고스란히 처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실망 실업 상태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면접시 탈락

또한 노동기회를 차별 당하는 경우는 입사 시험 혹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된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면접 과정에서 차별은 주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일할 능력이나, 일 하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전북 초등학교 교사 자격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전아무개씨(여, 30세, 지체 4급)는 면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면접시 탈락은 자신이 불합격 당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는 점과 면접점수 비공개로 더 이상 문제제기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아직까지 일반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능력을 어떻게 검증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비장애인은 경험의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경증과 중증의 장애인이 면접을 보았을 때, 중증 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생각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시 장애인은 별도로 모집해서 별도로 시험을 보고, 별도로 발표하게 된다. 2% 의무고용을 지키기 위해 신규채용 시 5% 장애인을 모집,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별도로 구별하는 것과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험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에 있어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일종의 구별이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별하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다름 아니다. 면접 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차별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지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 모집공고 제한

노동기회 차별과 관련하여 모집공고에서 제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예 원서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2건이나 나타났다. 모집공고는 원서를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삽입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신체 건강한 자’ 혹은 ‘용모단정 자’라는 표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원서접수를 포기하게 한다.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나를 배제하는’곳에 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까? 원서를 넣어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이 자기를 먼저 지배하는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지원을 포기하고 만다. 상담내용 분석결과 약 40%가 취업기회조차 얻지 못한 노동시장 진입의 차별이다. 모집공고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라) 원서접수 거부

뇌성 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남, 27세)이 대학 졸업 후 대망의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러 갔으나, 접수 창구에 있던 직원이 ‘글씨는 제대로 쓸 줄 아느냐’며 원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런 일은 최근에는 흔하지 않지만 모집공고를 본 후 직접 찾아가서 원서를 제출할 때, 편견어린 시선으로 보면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사례에서 이런 사례가 2건이나 되었다.

마) 부당 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 기회를 차별하는 세부 항목 중에 하나는 장애로 인한 부당 해고로 총 5건이 수집됐다. 교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 하에 면직처리가 되어버린 사례, 또는 도중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워버려 부당해고 된 사례,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택시를 바꾸면서 오토로 하지 않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직 시키는 사례 등 장애로 인한 부당 해고 사례가 나타났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복직될 가능성도 높지만, 장애로 인한 차별이고 부당해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 명확히 제시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노동기회 차별은 부당 해고, 원서접수 거부, 모집공고제한, 면접시 탈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대표적인 기회의 차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등 준비된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충원하여 차별 당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적절한 직무환경과 업무배치, 자신의 장애에 맞는 직업훈련 등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반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장애 가진 사람에게 노동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나 정책이 전무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몇 가지 사항만 기재하고 있을 뿐 장애 가진 사람의 노동권을 취업 전부터 적극적으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법 개정과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권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 직업훈련제한 및 적절한 시험환경 부재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 기회 차별로 직업 훈련 제한 및 적절한 시험 환경 부재가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손 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 시간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제대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상담이 있는가 하면, 경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의 직업 훈련생 모집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상담 사례 등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는 건수가 모두 6건이 되었다. IMF 이후 일반고용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아졌지만, 2층에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물리적 장벽이 통합적인 훈련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 훈련 과정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일반 직업 훈련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적절한 기자재 부재 등도 마찬가지로 걸림돌이다. 일반 직업 훈련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아울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형태의 직업 훈련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일반 직업훈련원에서 장애인 직업 훈련에 관한 할당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

나. 노동환경 차별

가) 적절한 직무 환경 및 업무 배치 차별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나,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의 경우, 회사는 최소한 그 사람의 업무 역량에 맞는 적절한 직무 환경 및 업무 배치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못해 결국 퇴사를 강요당하는 느낌에 ‘이게 차별이 맞나?’ 스스로 검증 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중도 장애 때문에 적절한 업무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더 바쁘고 힘든 부서 이전으로 무능력한 사람 취급당하며 퇴직을 강요받고, “계단을 오르내기기 힘들니 차라리 1층에 다른 팀이랑 혼자 있어라.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질 수 없으니 각서를 쓰라”고 강요당한 적도 있다. 이 경우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하찮은 일을 줌으로써 피해의식을 갖게 했는데, 압묵적인 소외와 무시가 곧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여성장애인이 온라인 콘텐츠 개발자로 취업을 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커피 등의 잔심부름을 시킴으로써 본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자꾸 눈치를 주어 퇴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상담을 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직무 환경 및 업무 배치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회사에 알리고 명백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함으로써 적절한 기자재 구비 등 환경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업무로의 이관 등 업무분장과 부서 선택에 있어 적절한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인사발령 기준보다는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다른 동료에 비해 승진 차별

입사 동기들에 비해 2~3년이나 늦도록 승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승진에서 탈락되었다며, 이런데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승진에서의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차별 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조용히 쉽게 처리할 방법을 고민한다. 왜냐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성격이 저렇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서’란다.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 등에 문의를 해보는 수준인데, 그럴 경우 유

야무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가 버린다. “왜 나 승진 시켜 주지 않느냐!”는 말은 비장애인도 힘든 일인데, 그것이 장애 때문이라는 자기 판단이 들 경우 회사측에 문제제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또 해결은 가능한가에 대한 상담이 많다. 그 이유는 회사측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 경우가 많고 ‘인사권은 재량권이 다’는 논리가 사회적으로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차별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다) 중도장애로 복직 연기 및 퇴직 강요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으로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됐을 경우 복직 연기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15건이 되었다. 예컨대 공무상 상해로 병가를 냈으나 직권이 면직되어 재심에 있으나, 복직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또는 교사인데 중도에 실명하였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 등이 예에 속한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 전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가를 냈을 경우, 병이 치료되었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와 질병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사회적 개념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신체검사 규정에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아 복직이나 채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도에 실명한 초등학교교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복직이 연기되었었다. 장애인단체에서 결합해 교육청 등에 질의서와 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해를 구하기도 했는데, 결국 언론에 의해 여론화되면서 복직이 가능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이 장애로 인해 차별 당하고 있는지’ 누군가와 상의하고 검증 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관련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결합으로 든든한 뺨이 되어주는 등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법 제·개정과 함께 국가기구의 적극적 활동이 요망된다.

마) 직장 내 인간 관계 차별

장애를 가진 이후에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 직장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 ‘집단 따돌림’으로 회사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담 사례가 모두 5건이 수집됐다. 이는 어렵게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해고조치, 복직연기, 임금차별 등의 노동환경에서의 인권 침해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에서 동료 혹은 상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를 볼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동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집단 따돌림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법·제도 또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차별이 회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의 분위기라는 것도 업무환경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직장 내 동료 등을 상대로 인권 교육 또는 장애인에 관한 인식 문제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바) 다른 동료에 비해 임금 체불 또는 저임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환경차별에 관한 인권 침해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동료에 비해 임금이 체불 당하거나 다른 동료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총 26건으로 18.6%로 나타났고, 이런 차별은 일반 노동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나, 이를 ‘장애’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문제 해결의 가닥 자체도 잡기 어려운 상태이다. 임금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 없기 때문에 각종 수당 등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동이나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은 특별한 수당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동수당 내지는 교통수당을 회사차원에서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장애 특성에 따른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로 인한 차이가 아닌 차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무환경 및 임금실태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국가기관에서의 모니터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 노동환경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다. 산재인정 및 산재 보상 차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원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에 대한 고발 등을 결심하는 차별 사례가 8건이고, 어렵게 산재 인정을 했더라도 보상 시 원래 장애를 가져 노동력이 약하다(기왕력)는 이유로 그 보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약하게 나오는 차별 사례 등이 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던 장애를 가진 사람(1급 지체 장애)이 산업재해를 입게 되자, 기왕력을 이유로 월 4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의 차별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소비자 권리 중에 보험 차별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노동력은 실제 사회적으로 인정됐던 것과는 다르게, 원래 갖고 있었던 장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력을 환산하는 기존 보상 관련 법률이나 관련 규정들의 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판례에 근거하는데, 그 판례들은 아주 오래된 연구논문 몇 편에 근거한 결과들이었고, 장애 개념을 신체적 손상과 무능력으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계와 사회복지계, 법조계에서 장애를 명확히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법의 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장애’에 대한 개념이 확대된다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능력상실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취업기회 제한] 47세가 되도록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이고 싶다.

[원서 접수 거부] 대학 졸업 후 이력서를 내자, 글씨를 쓸 수 있냐고 묻더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무시한 채 이력서도 접수 않함. 뇌병변 장애 27세, 남

[임금차별] 사장이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는 매월 월급을 주는데, 여러 이유를 대며 3-4 개월 쯤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산재보상] 월 25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던 내가 산재를 당했는데, 원래 장애를 가져 노동력이 없었다(기왕력)는 이유로 월 40만원으로 보상금이 결정됐다. 정말 억울하다. 지체 장애 35세, 남

2) 여성장애인 권리

여성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권리 침해는 총 843건 중 68건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모성권 차별, 성차별, 폭

력 등으로 중분류 하였다.

<표 4-15>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

여성장애인권리(843건 중 68건으로 8.1%)		68(건)	100.0(%)
모성권차별	산전후조리차별	2	2.9
	장애이유로양육권침해	7	10.3
	낙태강요	3	4.4
	소계	12	17.6
성차별	여성장애이유로재산권침해	1	1.5
	여성장애이유로교육기회침해	0	0.0
	여성장애이유로노동기회침해	0	0.0
	소계	1	1.5
폭력	가정내성폭력	5	7.4
	성폭력	38	55.9
	가정폭력	11	16.2
	폭력	1	1.5
	소계	55	80.9

가. 모성권 차별

모성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권침해 실태는 장애를 이유로 양육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 당하고, 이혼과 동시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 포기를 요구 당하는데,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재판과정에서도 장애를 가져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남편이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장애를 가진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에도 종종 나타나지만, 중도에 장애를 가진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산전·산후과정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2건이며, 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고서 결혼 혹은 연애하는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유전 등의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모성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양육권 침해는 특히 경제력에 중점을 두어 양육권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산전·산후 과정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제도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임신을 했을 경우 이에 관한 보조인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유전 등의 문제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산 보호비나 양육에 필요한 보조인인과 수당 지급 등 개인과 가족에게만 부담 지우지 않는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다’는 등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성차별

성차별에 해당되는 차별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는 여성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상속권을 차별 받는 경우 1건과 교육 또는 고용에서 차별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수집된 사례 중 상속권 차별은 단 한 건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미흡할 수 있으나, 형제 자매들의 모두 유산 상속을 받음에도 장애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는 분명한 차별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 상속권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들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모 또는 형제들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는 사실 등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 사례는 전혀 접수되지 않았으나, 장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본 연구자가 만난 30대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장애인은 어렸을 때, 장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한 자신의 차별에 대해 하소연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고, 이들 중 몇몇은 현재 검정고시 등으로 자신의 교육욕구를 채우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여성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 장애인의 교육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검정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학습도우미, 이동도우미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 또는 여성이라는 고용에서 차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2배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안이 있으나, 이런 대안만으로 여성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실제 여성장애인 실업률이

46.7%에 해당됨을 볼 때 일반 실업률의 20배, 일반 장애인 실업률의 2배로 나타나 여성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의 대안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 폭력

한편 여성장애인의 인권 침해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장애인이 폭력적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성폭력이 38건, 가정 내 성폭력이 5건, 가정 폭력이 11건, 폭력이 1건으로 모두 55건으로 80.9%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적 상황은 대체적으로 가족 또는 이웃, 아는 사람 등 주로 주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주로 무시, 감금, 구타, 언어폭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여성장애인의 폭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는 있으나, 이런 문제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성폭력 또는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성폭력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제도가 있으나, 위낙 성폭력 문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기소유예 또는 면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이외에도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수치심 등의 이유로 본인이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과 정신지체 여성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입증에 관한 신빙성 여부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표 4-16> 성폭력 가해자

구분	빈도	%
가족	5	13.2
친척	1	2.6
직장 및 이웃	30	78.9
타인	2	5.3
합계	38	100.0

위 표에서 보듯이 성폭력의 가해자를 살펴보면 가족이 5건, 친척이 1건, 직장 및 이웃이 30건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것이 94.7%로, 타인에 의한 것은 단 2건에 해당된다. 주변인은 친구의 오빠, 시설 보육사, 시설 원장, 오빠 친구, 친척, 동네 사람, 지역 주민, 아는 청년, 남편 친구, 직장 동료, 아들, 시아버지 등으로 우리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낙태 강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임신 사실을 알자, 낙태를 강요한 후 돈을 가지고 도망친 동거남

[장애 이유로 양육권 침해] 부인이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자, 이혼을 요구하며, 딸 여성과 살림을 차린 남편.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 인근 지역주민들에 의한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

[가정 내 성폭력] 아들이 휠체어를 타는 어머니를 강간했다.

3) 생존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생존권이 침해된 상담 건수는 총 47건으로 전체 843건 중의 5.6%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7> 생존권의 침해

생존권(843건 중 47건으로 5.6%)		47(건)	100.0(%)
생계유지권리 차별	생활고	45	95.7
	생계유지수단제한	2	4.3

교육받지 못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 또는 장애를 가진 이후에 해고를 당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한 이후에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제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모두 45건이 접수됐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점상만을 단속하는 경우 2건 등 모두 47건이 접수됐다. 순수하게 먹고 살 길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상담 건수라고 한다면 47건이 사실 적지 않

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이다.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못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겨우 90여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군대 간 아들이 제대를 하자마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을 걱정하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명백한 한계를 확인하여 수급권자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초연금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너희도 22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봐라!’라며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힘겹게 살다가 유명을 달리한 최옥란씨 사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생활고] 아들이 제대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아직 직장도 구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는 이유라면 우리는 당장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고]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됐는데, 아내가 모든 재산을 갖고 부인과 아들이 도주했는데, 이런 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4) 건강권

<표 4-18> 건강권의 침해

건강권(843건 중 26건으로 3.1%)		26(건)	100.0(%)
진료권차별	진료계획참여및알권리침해	12	46.2
	서비스기관부재	4	15.4
	소계	16	61.5
적절한치료권차별	수술비필요	3	11.5
	치료비필요	2	7.7
	간병제도미비	3	11.5
	의료재활치료필요	2	7.7
	소계	10	38.5

장애를 가진 사람도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건강권과 관련된 인

권 침해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26건으로 전체 3.1%를 차지하였다. 건강권은 진료권 차별과 적절한 치료권 차별 등 두가지로 중분류 하였다.

가. 진료권 차별

진료권 차별을 살펴보면 진료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알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가 12건으로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4건으로 15.4%로 나타났다. 장애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진료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당연히 기본권 차원의 ‘권리’로써 인정돼야 하고, 이는 곧 진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위의 사례에서 진료권 침해 중 ‘진료계획 참여 및 알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는 주로 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료사고가 났으며, 이로써 2차 장애가 발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호소가 주류를 이룬다. 장애인의 건강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료계획 참여 및 알권리 침해’라는 점을 볼 때, 법 제도 개선 혹은 의료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진료 체계 개선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권 확보를 해야 한다. 이 외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갈만한 치과가 없다거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이 갈만한 병원이 없다고 하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병원 부재에 따른 차별 사례가 4건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합병증이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병원을 찾는 일이 많다. 그러나 장애에 적절한 치료방식과 도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다면 이중의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일반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기기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적절한 치료권 차별

적절한 치료 차별 항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차별사례 접수가 10건 접수되었다. 이는 장애

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서비스 항목에서도 언급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널리 확대하여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는 일반적으로 질병을 갖는 사람들과 달리 장애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 체계가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 그 자체로 인해 소요되는 진료 또는 적절한 치료, 또는 치료 비용, 수술 비용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기관부재] 전신마비 장애인, 갈만한 치과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진료계획 및 알권리 침해] 의료사고로 장애아동을 출산했다고 확신한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가.

[수술비필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데 수술비가 없다. 제발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5) 교육권

교육권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48건으로 전체 5.7%를 차지하였다. 교육권은 교육기회와 교육환경 두 개의 범위로 구분하였는데 교육권 침해 총 48건 중에서 교육기회 차별은 28건으로 58.3%, 교육환경 차별은 20건으로 41.7%를 차지하였다.

가. 교육기회차별

가) 취학기회 제한

2001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이 약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50% 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학교가 적절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레 포기하고 말거나, 장애가 너무

심해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족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혹은 입학 신청을 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거부당하면 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한 번 거부를 당하게 되면 모든 학교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학교교육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다. 따라서 50% 이상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취학을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을 전국적으로 찾아내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혹여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표 4-19> 교육권의 침해

교육권(843건 중 48건으로 5.7%)		48(건)	100.0(%)
교육기회차별	취학기회제한	2	4.2
	모집요강제한	1	2.1
	연령제한	0	0.0
	원서접수거부	9	18.8
	편입학거부	7	14.6
	교육기관부재	2	4.2
	진학거부및강요	7	14.6
	소계	28	58.3
교육환경차별	편의시설미비	5	10.4
	학급내인간관계차별	7	14.6
	통합교육거부	1	2.1
	교육프로그램참여거부	1	2.1
	적절한시험환경부재	2	4.2
	학습도우미필요	2	4.2
	수화점역교재등필요	2	4.2
	소계	20	41.7

나) 모집요강 제한

2000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0여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교가 모집요강 자체에서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거나, 교육환경 마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 ▲우리 학교

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은 원서접수 전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참고 사항 비슷하게 처리된 것이다. 단지 참고일 뿐이라 할 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구 하나하나는 원서를 제출하는 장애학생이나 부모들에게 큰 심리적 위축을 주게 된다. 결국 이 기준에 자신이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기검열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기결정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모집요강의 차별적 문구, 즉 학교당국의 차별이다.

다) 편·입학 거부

주로 문제제기가 되어온 곳은 대학교였다. 지난 2000년 청주대에 편입하려던 황 00씨는 시각장애1급이었지만, A대에서 4년의 평점이 4.0이 넘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50년이래 시각장애학생이 입학한 적이 없다” “편의시설이 없어서 오히려 역차별 당할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라며 원서 자체를 거부하였다. 4년 동안 대학교육을 받은 서류를 밀며 검증하려고 했지만 학교는 막무가내로 거부하였고, 이어 특수교육진흥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이야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은 고등학교까지만 해당하는 법”이라며, 맘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학교당국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정책의 기본은 ‘자율’이라는 것이 학교당국의 입장이었고, 이를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은 자율이 기본 정책이다”는 말로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사립학교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장애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후 학교는 언론의 힘에 밀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원서접수를 수락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학교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각서 요구는 일반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전학을 받아들이면서 각서를 요구한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가 책임지나’는 것이었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학교당국은 장애학생의 전학을 ‘커다란 특혜’나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이나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하는 사람들에게

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교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특수학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모든 교사 연수내용으로 지정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일반학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 교육기본법에 장애학생의 권리가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라) 교육기관 부재

‘장애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형태로 교육받게 되는가’ 이것이 부모님들의 걱정이다. 어느 곳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적절한 환경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야만 그나마 한 두 곳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당사자는 질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한다. 그래서 모범적인 곳, 열의 있는 곳, 특수교육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학교가 어딘 지에 대한 문의도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교육기관 부재의 문제는 특히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교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유치원에서는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정부지원이 없어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을 하면 거부하기 일쑤이다. 이에 지난 2002 10월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누구보다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의 통합교육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이해한다면, 국가적 지원은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 부재로 집안에만 방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책임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적 낭비이며,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 진학거부 및 강요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이 왜 일반학교에 오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 ‘장애학생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특수학교로 가야 한다’는 것이 거부하는 일반학교의 인식이다. 학교장은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갖고 진학이나 진학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 일쑤고, 이러한 권력관계에 익숙해져있는 학부모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라는 것과 용기를 주지

않으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학생의 진학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와 권리를 분명히 알려줄 곳이 필요하다. 교육청 등의 특수교육담당자도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학교장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 부모들이 결국 민간단체를 찾거나 다른 국가기구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민원은 다시 해당 교육청으로 내려오고 만다. 장애학생의 당연한 진학이, 양보만을 강요당하며,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전폭적 지원으로 가능할 것이다.

나. 교육환경 차별

가) 편의시설미비

뇌성마비 학생이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은 대부분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턱제거 등 편의시설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건수로는 5건이 된다. 그러나 일반학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대상 시설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 차별금지 등의 2항에 의하면, 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라 할 지라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시설은 꼭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장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예산이 없다 등등의 이야기만 하며 장애학생의 교육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겨도 처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학생을 자기 학교의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보살펴준다, 받아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2, 3층에 교실이 있어 매번 부모가 없어주며 등하교를 시키거나 하면서 전적으로 부모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1층에 교실이 있다하더라도 음악실이나 미술실에 갈 경우에는 누군가의 등에 업혀 모든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동해야만 한다. 혹은 혼자서 빈교실을 지켜야만 한다. 따라서 이런 취약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원인을 확인하여 편의증진법 적용이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시설로 확대되어야 한다.

나) 학급 내 인간관계 차별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언어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의사소통 하는 것을 포기하기 마련인데, 원적학급의 교사가 장애학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이들은 교사를 따라하기 마련이다. 교사가 무관심하면 학생들도 친구로 보지 않고 ‘애자, 애인’이라며 놀리며 왕따 시킨다. 휠체어를 탄 아이를 맨 뒷자리에 짝도 없이 홀로 앉혀둔 것을 부모님이 보고 항의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며 짝 편성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고, 결국 시정해주지 않았다. 부모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해 휠체어를 탄 초등학생은 자살을 택했다. 해당 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렇게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학교, 교사, 부모, 학생이 함께 논의하며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에 따른 특수성은 부모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학생과 부모가 통합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신뢰하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통합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통합교육 거부

일반학교에서는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애학생을 거부한다.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학생이 입학할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학교측은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는커녕 특수학교로 가라고 거부한다. 수업편성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서의 교육과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을 잘 조절해야 하지만 특수학급에 하루 종일 있도록 한다. 의미 있는 통합교육은 기계적으로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일반 아이들과 얼마나 교류하고 함께 하느냐 일 것이다.

라) 교육프로그램 참여 거부

체육수업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교실을 지키게 하거나 별도의 기관에서 체육을 했다는 증명서를 떼어오라는 경우가 있다. 그 학생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하기보다는 일반학생들 중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손을 드는

것이 불편한 학생 앞에서 무슨 일이든 “손을 들어 보라”하고, 그 장애 학생에게 다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항상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 학생은 한 번도 발표를 한 적이 없다. 제 7차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모두 바뀌었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자교과서를 만들어주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있다.

마) 적절한 시험환경 부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따로 배정하게 되면 일정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1.5배의 시간을 더 주거나 확대시험지를 배포하고 대필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적절한 지원이 되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 따라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또 토플이나 토익, 텡스 등의 성적이 있어야만 대학원, 유학, 기업체 등을 들어갈 수 있는데 중도에 시력을 잃은 학생은 점자를 알 수도 없고 시험지를 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원하는 대학원이나 기업체를 지원하지 못한다.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시험주최측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한마디로 끝이다. 운이 좋은 경우에 공식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채’라는 형식으로 채용되기도 하지만 그건 장애인에게 “특별히”라는 이름이 어울린다는 고정관념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함이다. 기회와 조건을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아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다.

바) 학습도우미 필요

자폐나 정인지체를 가진 학생의 경우, 수업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매번 그 학생을 주시하는 등 일반학생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현재는 거의 특수학교로 몰리고 있는데, 만일 학습도우미가 있다면 통합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1:1 학습 기회제공은 보편적인 실제적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사) 수화, 점역교재 등 필요

이는 학습도우미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학습도우미인가에 따라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를, 시각장애인에게 활자가 확대된 교재나 점역 교재가 제공된다면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아) 교육비 지원

현재는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아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 서울대만 경우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적 비용이 뒤따른다. 등,하교를 위한 교통비(잡은 택시 이용)나 별도의 교재 구입비 등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권과 관련하여 차별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육권 침해는 노동권, 생존권 등 다른 차별침해 영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분석됐다.

[원서접수거부] 시각장애를 이유로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거부되었다.

[전학거부및강요] 교사가 정신지체 아동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며 전학을 강요

[적절한시험환경부재] 고2 청각장애 딸의 영어듣기시험평가, 시험배려 전혀 없어 객관식은 찍기로 일관하고 있다.

6) 문화향유권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1998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을 보면 제7조에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거부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화참여에 대한 거부는 장애에 대한 무지, 편견에 의해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기제에 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 11건으로 1.3%에 해당되며 이는 참여권으로 중분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참여거부, 문화공간편의시설미비, 문화비용 필요 등으로 소분류하였다.

<표 4-20> 문화향유권의 침해

문화향유권(843건 중 11건으로 1.3%)		11(건)	100.0(%)
참여권차별	참여제한(참여거부 등)	5	45.5
	문화공간편의시설미비	5	45.5
	문화비용필요	1	9.1

가. 문화공간 편의시설 미비

문화권 차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편의시설의 부족에 따른 접근도가 떨어져 문화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문화공간의 편의시설미비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5건인데, 대부분 소비자로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도 문화시설에 접근이 안 되는 등의 심각한 차별사례도 접수되었다. 예컨대 친구와 함께 극장에 갔으나 휠체어 좌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혼자 뒤에서 관람을 하게된 경우, 영화관입구에 수많은 계단에 좌절하여 되돌아온 경우, 영화를 보러 왔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업혀서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경우 등 문화생활에 접근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적 요소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람석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 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동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시설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나 소급입법 금지라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 동 법률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주에 대한 권고를 통해 편의시설의 축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공연·전시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모양으로, 모양을 소리로 바꿀 수 있는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문화시설이 영화관이라고 한다. 외화의 경우 자막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인기 있는 영화는 거의 다 시각 장애인용 비디오로 출시되고 있다. 대화 중간 중간에 배경 및 상황에 대한 해설을

결들이면 시각장애인에게는 훌륭한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것이다. 즉 특정 장애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편의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외화만 보게 할 것이 아니라 방화도 볼 수 있도록 방화에도 자막처리를 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방송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서 자막처리, 수화처리, 소리전환 등을 신설하고 이 경우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법률에서는 시민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거나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문화비용 필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나 콘서트나 관람 비용이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사례도 1건이 있었다. 상담사례로 비록 1건이 접수되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에서부터 접근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확보를 위한 장애우문화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에서 일정비율을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취약대상과 장애인문화생활증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할당하여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이 창작의욕이 고취될 것이며, 복지관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청소년 분야에 한해서 문화관광부는 이례적으로 장애청소년 지원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98년 7월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 수립시 장애인 바로 이해하기 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장애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연계프로그램개발, 비인가 소규모 장애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시책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외에 문화의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연대의 방식은 ‘나눔 운동’ 차원일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장애우문화센터 등에서 펼치고 있는 1% 나눔 운동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

적인 것 같다. 결코 돈 없이 얻기 어려운 문화상품들을 나눔 운동을 통해 사회의 공동체적의미를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시키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호주는 ‘여가친구’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친구로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매개체조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대는 장애인개인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장애인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단체나 지역복지관들에서 이러한 일은 지속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다. 참여제한(참여 거부 등)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직업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당한 사례, 다른 학생들이 캠프를 가는 데 정신지체인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당한 사례, 휠체어를 탔다고 나이트 클럽에서 거부당한 사례 등 참여제한 경우가 5건이었다. 문화생활의 보편화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새로운 문화창조로 민족문화를 창달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1%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도시의 큰 건물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 문화관, 시설들에도 이러한 문화 장식이 자리하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물이니 만큼 정부주도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문화는 여러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에 한정하면, 장애인 상에 대해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민권을 가진 동등한 시민이라는 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TV나 라디오에서 그려내고 있는 장애인상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방송의 소비자로서 당당한 외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송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경험은 독재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KBS에 대해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다. 장애인이 더 이상 수동적인 청중으로 머물러서는 안되겠다. 특히 라디오나 방송 등에서 그려내는 장애인상은 항상 불쌍하고 무언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심지어는 장애아를 잉태하였을 때 낙태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애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그리기도 한다. 이러한 방송태도에 대해 장애인도 소비자로서 쟁기를 박아야 한다. 방송에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작지만 99년 말 통과된 통합방송법에 의해 열리긴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제5장 69조 6에서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장 제70조 7에서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2001년 여성단체연합에서 제작한 ‘호주제 폐지,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란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 제5장 제51조 1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인문제를 올바르게 알리고 일반시민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자그만 통로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방송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를 위한 대안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대안문화운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매년 광화문네거리에서는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한다. 이 축제에서 장애인들은 ‘휠 연대’를 한다. 휠체어와 키보드, 자전거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서명도 하고 차 없는 거리에서 질주를 해보곤 한다. 이처럼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대안문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서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및 선언에 나타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갖는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별기제의 제거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향유권은 단순히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권리 및 접근권 측면 등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공간편의시설미비] 수많은 계단이 있는 영화관 앞에서 좌절, 업혀서 영화관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참여제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학생인데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호프집에서 거부



당했다.

7) 접근권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인권 침해 사례 843건 중 25건에 해당된다. 접근권 침해는 이동권, 건축물접근권, 정보접근권, 거주이주권으로 나누었다.

이어서 접근권 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건축물 접근권(64.0%)이다. 건축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7건이 접수됐고, 주차장에 관한 접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9건이 접수됐다. 우리 사회의 모든 건축물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거의 ‘턱’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정도의 사례는 너무도 적은 수에 해당되지만 이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 사례로는 적게 접수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21> 접근권의 침해

접근권(843건 중 25으로 3.0%)		25(건)	100.0(%)
이동권차별	편의시설미비	3	12.0
	안내표지판및방송등미비	3	12.0
	소계	6	24.0
건축물접근권차별	건축물편의시설미비	7	28.0
	주차제한	9	36.0
	소계	16	64.0
거주이주권차별	지역주민거부	1	4.0
	거주이주권침해	2	8.0
	소계	3	12.0

다음은 이동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다. 이동권 항목으로 총 6건이 수집됐는데 이 중 편의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3건, 안내표지판 및 방송 등 미비로 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3건이다. 이 또한 권위주의의 상징인 턱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교통 환경에 비추어 매우 적은 수의 상담 사례이지만,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동에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드러

내고 있다.

지역주민의 거부 또는 거주 이주 자체를 침해하는 등의 거주이주권 침해는 접근권 항목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에 애매하지만, 그나마 가장 연계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접근권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아이가 자폐아동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을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거주 이주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거주이주권 침해] 아이가 자폐아동이라는 이유로 집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함.

[건축물접근권침해]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있어,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청했다가 무시당하고, 폭력까지 당함. 이를 신고하자 경찰이 와서 오히려 몸이 불편하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돌아 다니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고 비장애인 편을 들어줌.

[안내표지판 및 방송등 미비로 이동권 침해]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에 다니는데 버스 안내 방송이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하차하여 한 개 또는 두 개 정류장을 다시 걸어서 복지관에 다니고 있음.

8) 정보 접근권

연구를 위해 수집된 인권 침해 사례 843건 중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이 정보접근권이 116건으로 13.8%를 차지한다.

정보접근권의 침해는 정보접근차별과 정보매체접근차별로 나누었다. 정보접근차별은 정말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 지, 또한 어떤 정보가 있는 지조차 몰라서 상담을 한 경우이다. 또한 정보매체접근차별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그리고 뇌병변 장애 등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체 부족으로 일어나는 각종 차별을 분류하였다.

가. 정보접근 차별

정보접근차별은 장애인복지시책접근제한이 42건(36.2%), 상담 및 서비스기관 문의 21건(18.1%), 법률상담 및 자문 21건(18.1%), 장애인등록 절차 및 혜택문의 18건(15.5%), 기타 10건(8.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 욕구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책을 문의하거나,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문의하는 등의 단순 정보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법률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방법 등 주로 장애인 복지 시책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본 상담 사례를 제공한 기관의 특성상 법률 자문 변호사 등 법률가들을 다수 자원으로 활용하여 법률 상담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장애인전화(1588-0420)가 시행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공간을 넘어서 어딘가에 정보 욕구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22> 정보접근권의 침해

정보접근권(843건 중 116건으로 13.8%)		116(건)	100.0(%)
정보접근차별	장애인복지시책접근제한	42	36.2
	상담및서비스기관문의	21	18.1
	법률상담및자문	21	18.1
	장애인등록절차및혜택	18	15.5
	기타	10	8.6
	소계	112	96.6
정보매체접근차별	수화및자막서비스제한	1	0.9
	점자및음성서비스제한	2	1.7
	컴퓨터이용권제한	1	0.9
	상징적그림서비스제한	0	0.0
	소계	4	3.4

나. 정보매체접근차별

정보매체접근차별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매개체의 부족으로 인한 차별사례를 분류한 것으로 수화 및 자막서비스 제한, 점자 및 음성서비스 제한, 컴퓨터이용권 제한, 상징적 그림서비스 제한 등으로 나누었다.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화나 자막이 각종 서비스 형태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인의 경우는 점자나 음성서비스가 필요하며, 또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보다는 간단한 기호나 상징적인 그림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나 휴대폰 등 생활 속에서 중요한 기기로 자리잡은 매체들에 대해서는 장애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서 TV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이동통신 요금납부서가 점자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하다”, “예금통장이 점자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하다”, “뇌성마비장애인인데 나에게 맞는 주변기기가 없어서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사례 등 4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정보접근 매체차별은 접수된 건수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장애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행하고 있는 일상생활이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도,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TV를 보는 것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이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접근수단 및 장치가 필요한 데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보매체 접근수단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또한 5~6년 사이 인터넷이라는 정보 공유의 장이 활발해 지면서, 장애인에게는 한편으로는 집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이동이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취득의 대안이 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 구입과 인터넷 망 설치 등의 경제적 이유, 자신의 장애에 맞는 각종 주변장치나 소프트웨어 개발 미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 부재 등으로 현실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으랴 하겠지만, 장애인 가족 중에는 아직도 컴퓨터가 없는 집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이는 98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너무 오래된 통계이고 있다 하더라도 낙후된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자신의 장애에는 불편한 주변기기를 가지고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더욱더 정보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정보취득과 이용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결정되는 현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차별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보 접근권 침해]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장애를 갖게 됐는데, 장애인 등록과 절차를 알고 싶다.

9)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지원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권리들이 침해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런 지원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치이다.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인권 침해 사례는 총 843건 중 88건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서비스는 비용지원 차별과 도우미지원차별, 그리고 보장구 사용권 차별로 나눈다.

<표 4-23> 지원서비스에 있어서의 침해

지원서비스(843건 중 88건으로 10.4%)		88(건)	100.0(%)
비용지원차별	장애추가비용필요	10	11.4
	융자지원필요	34	38.6
	소계	44	50.0
도우미지원차별	심리상담필요	9	10.2
	이동도우미필요	9	10.2
	가정도우미필요	9	10.2
	소계	27	30.7
보장구사용권차별	보장구구매및수리비용필요	8	9.1
	보장구품목제한	9	10.2
	소계	17	19.3

가. 비용지원 차별

비용지원차별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즉 이동비용, 의료비용, 양육비용 등이 해당되는데 이에 관한 상담 사례는 총 44건이다. 장애계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나. 도우미지원차별

한편 비용지원과 맞물려 지원서비스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도우미지원이다. 총 27건이 접수됐는데,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동도우미, 가정도우미, 심리상담가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보장구사용권차별

다음 지원서비스로 인정돼야 할 것은 보장구에 관한 사항이다. 보장구는 현재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동휠체어가 아직도 보장구로 등록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보장구 품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보장구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반드시 그 비용이 지원돼야 한다는 상담도 8건이나 접수됐다.

[도우미지원] 본인과 아내, 아이 등이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서로가 지지가 되기 보다는 갈등 관계가 증폭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지를 알고 싶고, 그런 가족이 없다면 우리 가족의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해줄 심리상담가를 소개시켜달라.

[비용지원] 온 가족이 장애를 가졌는데, 최근 딸(근이양증을 가진 장애인)이 취직을 해서 국민연금 등을 내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나머지 가족들은 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장구 품목제한] 무료로 받은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장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동휠체어가 보장구로 인정돼야 맞는 것인데 왜 안되는 것인지

10) 형사상의 권리

형사상의 권리 침해라 함은 형사상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 혹은 피의자로서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공권력에 의해 차별 또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상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12건으로 전체 1.4%를 차지하였다.

<표 4-24> 형사상의 권리 침해

형사상권리(843건 중 12건으로 1.4%)		12(건)	100.0(%)
법절차위반	불법체포	2	16.7
	자백강요	4	33.3
	소계	6	50.0
피해자로서권리침해	의사소통제한으로수사미진	1	8.3
	진술의신빙성불인정	5	41.7
		6	50.0

가. 법절차 위반

가) 불법체포

형사상의 권리 침해에서는 주로 자기 표현이 약한 정신지체인이나, 언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기 표현력이 약한 정신지체인을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몰거나 성추행범으로 몰아 불법 체포하거나 가해자나 범인으로 몰아 자백을 강요하는 사례가 6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드러났다. 또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자폐장애인이 불심검문에 걸려 그대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심검문,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적 장애로 판단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 사회복지사 등의 대동 하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 자백강요

불법체포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까지 와서 정식으로 수사를 받는다. 강하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두려움에 모든 걸 인정하고 마는 게 정신지체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모든 걸 인정하면,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증거가 없더라도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러한 피의자의 태도나 장애에 대해 “몰랐다”고만 답할 뿐이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장애인을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

에 보여지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위협적 행위나 말투에도 자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또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로서 권리 침해

가) 의사소통 제한으로 수사미진

여성정신지체인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족들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내 일처럼 나서서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고, 그래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결국 가해자들이 부인하는 바람에 기각 당하고 말았다.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 사건에 대해 고소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철저하게 혹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수사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적극적 의견 개진도 할 수 없고, 결국 문제제기도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화통역제도의 일상화 등 관계기관이나 단체와의 상호협조체계를 제도화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애로 인한 명확한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나) 진술의 신빙성 불인정

정신지체인의 경우, 대체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신지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행동반응을 나타낸다. ‘무조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으려는 태도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아이들에게 놀이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정신장애, 정신지체 장애인,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형사상의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기표현력이 약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이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불법체포] 정신지체인이 강도살인사건이 난 주위를 건다가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소통이 안되어 무조건 체포되었다.

[자백강요] 청각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폭행을 다했다. 경찰은 수화통역사 없이 수사진행, 피해자인 청각장애인을 피의자로 몰아 벌금형을 주었다.

11) 시설장애인 권리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거주이주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8건으로 전체 0.9%를 차지하였다.

<표 4-25> 시설장애인의 권리 침해

시설장애인권리(843건 중 8건으로 0.9%)		8(건)	100.0(%)
사생활권차별	자기결정권침해	1	12.5
	사생활권리침해	1	12.5
	소계	2	25.0
폭력	폭력 및 성폭력	5	62.5
	소계	5	62.5
적절한서비스수익차별	적절한서비스받을권리침해	0	0.0
	소계	0	0.0
거주이주권차별	거주이주권리침해	1	12.5
	소계	1	12.5

가. 사생활권 차별

가) 자기결정권 침해

우리 나라 현실에서 시설에서 자기결정권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그러나 신고시설의 경우는 국가 업무를 대신해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시설 생활장애인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투표권을 침해당하는가 하면, 밖에 나가고 싶어도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며 허락하지 않기 일쭤다. 기본적으로 대규모화된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본 틀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시간, 식사시간을 꼭 맞춰야 하며,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 30대 장애인이 저녁식사를 너무 일찍 해 밤에 배가 고파 식당에 들어갔다가 들켜 치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또 미신고시설에서 목욕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사진에 담아야 한다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뇌성마비장애를 갖고 있던 여성이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위생의 문제 때문에 집단적으로 잘라야 하는 경우,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으나 무시로 일관하는 원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시설로의 이전 등 자기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로 부터 나온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시설생활자들의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엄두도 못내고 그게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설평가라는 것은 관리의 측면이 아닌 생활자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생활권리 침해

집단생활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는 의미는 시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 시설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맘놓고 연애를 하기도 힘들다. 외출하고 싶어도 시설측에서 차량 등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으며, 혼자 방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나. 폭력

가) 심리 및 언어 폭력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와 대상자로 구분되어져, 선생님과 보호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대체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언어폭력에서는 무조건 어린 아이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로 일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심리폭력은 방치나 왕따, 무관심 등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미신고시설에서는 방치가 가장 심각하다. 실제 방치는 심각한 폭력의 하나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자폐나 정신지체, 심한 중복,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하나부터 열 가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없어 관리자를 더 고용할 수 없고, 시설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 핑계로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방치로 사고가 나고 치료행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 사망까지 이른 경우들이 미신고 시설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또한 의도적인 배제와 무관심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욕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 자기 앞날을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시설이 늘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환경 마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신고시설의 경우는 사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나) 폭력

시설 내 원장이나 보육사가 폭행하는 사례 등인데 원장이나 보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관계에서 하위구조에 있는 시설이용자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체장애인이 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더욱 심한 장애를 갖게 되었으나 의료적 조치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구하는 게 많다는 이유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뺨을 때리고 휠체어를 넘어뜨려 공포감에 떨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폭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미신고시설에서 두드러진다. 관리자도 거의 없거나, 대부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설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예산의 부족으로 단순 ‘수용’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 성폭력

10년 전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착복하고 여성장애인을 성폭행 했던 원장이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시설의 경우 폐쇄성 때문에 내부의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자원활동가나 시설종사자들, 혹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권위조사 대상시설에 포함해야 한다. 작은 구멍가게를 내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기거하는 곳,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사회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가 자체가 인권침해 가해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다. 적절한 서비스 수익차별

가) 적절한 서비스 받을 권리 침해

장애유형에 따라, 정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로 이 모든 욕구와 당연한 권리들은 전혀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의료방치로 장애는 더욱 심각해지고 활동은커녕 수용되어져 하루종일 TV앞에 앉아 있는 게 시설생활자들의 하루 일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고시설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미신고 시설은 방 하나에 사람 그득 모아놓은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곳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도 없다. 신고시설이든 미신고시설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다. 가축보다 못한 환경이라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전폭적인 획기적인 예산의 확보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라. 거주 이주권 차별

가) 거주 이주권리 침해

어느 시설에서 어느 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된 바 없으며, 그런 통보조차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당일 날 짐을 싸라고 했단다. 어딜 가냐고 물었더니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이라는 한마디 말뿐이었고, 시설 관리자들은 인사도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8년 동안 그래도 함께 얼굴 보며 살아

왔는데, 전혀 인간취급을 받지 못한 느낌이었던다. 가족이 없고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천덕꾸러기, 업신여김을 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현재 시설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생활자들의 권리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모두 관리, 운영의 원칙과 방법만 정리해 두었다.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애매한 임의조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설생활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리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이는 법,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할 것이다.

[폭력] 지체장애인인데 시설에서 원장의 구타로 인해 더욱 심한 장애를 갖게됨.

[거주이주권리침해] 시설에서 살아온 8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나가고 싶다.

12) 가족권

가족권을 침해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73건으로 전체 8.7%를 차지하였다. 결코 작지 않은 이런 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한 권리를 차별하거나, 가족생활권이 차별당하는 등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표 4-26> 가족권의 침해

가족권 (843건 중 73건으로 8.7%)		73(건)	100.0(%)
결혼할권리차별	장애이유로결혼반대	1	1.4
	결혼제한	13	17.8
	소계	14	19.2
가족생활권차별	자기결정권침해	4	5.5
	가정폭력	18	24.7
	장애로이혼별거	11	15.1
	가족임의시설입소추진	23	31.5
	장애인녀출산으로이혼	3	4.1
	소계	59	80.8

가. 결혼할 권리 차별

결혼할 권리를 차별당하는 경우는 장애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해 하소연을 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에 제한을 받은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1건, 결혼 적령기를 놓쳤거나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못했거나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을 기회조차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례 등이 13건으로 접수되었다.

나. 가족생활권 차별

장애를 이유로 가족생활권에서 가장 많은 인권 침해사례를 보인 것이 가족 임의로 시설입소를 추진한 것으로 23건이나 된다. 장애별로는 정신지체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부모나 형제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입소 추진하는 경우가 23건으로 가족권 침해에서 3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시설입소문의 상담 총 32건 중에서 본인의지로 결정은 9건(28.1%),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추진하는 경우가 23건(71.9%)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특히 정신지체장애우 가족에서의 시설입소 추진이 13건으로 50%를 넘었다. 가족의 경우 경제적·심리적·정신적 부담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시설 입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장애우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도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싶지 않고 가족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4-27> 시설입소시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구분	빈도	%
본인의지	9	28.1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추진	23	71.9
합계	32	100.0

가족들이 장애인을 입소시키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보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수당 등 관련 수당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은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장애인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보호시설, 이동서비스, 목욕서비스 등 장애인의 실제생활을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시설입소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입소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퇴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가족권 중에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상담 사례가 무려 18건(24.7%)으로 가족권 침해사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무시, 폭언 등 심리·언어폭력, 구타, 폭행 등 물리적 폭력, 성폭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사례를 보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사회적 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 내에서도 약자의 위치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장애를 가진 기혼 여성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남성인 경우는 부모나 형제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복되는 가정폭력 속에서 벗어나고자 가해자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시설입소나 쉼터를 요청하는 사례도 6건이었다. 또한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가정위기를 맞은 사례도 3건이나 되었다. 여성장애인권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여성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중의 인권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애로 이혼 별거 차별 항목을 보면 11건 중에서 9건이 여성장애우가 장애를 이유로 이혼이나 별거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도장애를 갖게된 여성의 경우 남편의 외도와 구타, 시부모의 학대 등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녀를 출산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가 3건이 있는 데 유전 또는 여성이 처신을 잘못하여 장애아가 태어났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이다. 눈여겨볼 사례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식의 무시나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상처받고 심리·언어폭력에 가슴 아파 하는 사례도 4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초기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며, 쉼터 등 지원서비스를 받더라도 비장애인 위주의 시설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의 보급이 중요하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기구에 장애인폭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핫라인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차별은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어려서부터 인권교육, 장애인 상의 변화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지체장애여성,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고 결혼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남편이 폭력을 행사. 이혼하고 싶다.

[가족임의시설입소추진] 정신지체 딸이 학교를 졸업한 후 갈 곳이 없다. 갈만한 시설이 있는가.

[장애로이혼·별거]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시부모가 이혼을 요구한다. 남편도 시부모 의견에 동의한다. 어떻게 해야하는 가.

[장애인녀출산으로이혼] 태어난 장애아가 아내의 장애에 의한 유전 때문이라며 이혼을 요구한다.

13) 참정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참정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우리 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공히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참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7건으로 전체 0.7%를 차지하였다.

<표 4-28> 참정권의 침해

참정권(843건 중 7건으로 0.8%)		7(건)	100.0(%)
선거권차별	투표권침해	2	28.6
	소계	2	28.6
선거접근권차별	선거정보접근권침해	2	28.6
	투표소접근권침해	3	42.9
	소계	5	71.4

가. 선거권 차별

가) 투표권 침해

몸이 불편해 투표소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고 가족이 임의대로 판단해 본인에게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가족 맘대로 기표해서 보낸 경우도 있다. 이는 대리투표이고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또한 선거법에 몸이 불편하거나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대동하여 기표소 안까지 함께 들어 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선거관계자들이 끝까지 막는 바람에 부부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적도 있다. 선거관계자들의 무지로 소중한 2표가 침해당했다. 이러한 투표권의 침해는 시설에서 심각하다. 원장이나 재활교사들이 자기표현력이 부족한 시설생활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2000. 7. 대전 한마음 요양원에서 원생들을 대리해 투표한 혐의로 원장 및 생활교사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00형제47736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임시부재자투표소 설치 등 시설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꽃동네 등에서도 집단 몰표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지방검찰청은 2001. 3. 30.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는 사위투표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위등재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보호에 기여해 온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직접 대리투표를 했던 생활교사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장애인단체와 언론기관에서는 이러한 조직적인 시설 내 선거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장애 가진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이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시각보다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점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선거접근권 침해

가) 선거 정보 접근권 침해

근래는 대중합동연설 등의 선거운동 방식보다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체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선거법에서는 방송토론회 등에 수화나 자막방송 실시, 점자공보물 배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거정보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공식선거일 전부터 관련자들이 나와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토론회를 자주 한다. 그러나 방송법이나 선거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실시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화면만 볼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후보자들이 점자나 확대 인쇄된 공보물, 녹음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책공약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추가비용을 언급하며 제작을 하지 않고 있고, 국가는 후보 책임이라며 제작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방송법 등 관련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나) 투표소 접근권 침해

투표소접근에 대한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보통 투표소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설치가 되는데, 워낙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선관위나 행자부는 투표소는 일반인 기준이라며 장애인의 편의만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급기야는 투표소의 편의시설 문제로 참정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8명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7단독(장준현 판사)은 “장애우의 선거권행사와 관련한 법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포함한 만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지고, 국가인 피고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관련법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면서 각 원고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장애인의 투표장소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이후 선관위가 항소하고 다시 상고하여 2002. 5. 30 대법원에서는 1명의 장애인에 한 해, 국가가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나 국회차원의 개선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

[선거정보접근권침해] 1999, TV 3사에 후보토론회 등 방송에 수화통역을 요구했으나 화면이 가린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선거정보접근권침해] 시각장애인인데 선거 때는 부족하나만 점자 홍보물만 나온다. 실제로는 음성 홍보물이 더 필요하지만 음성으로는 홍보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투표소접근권침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투표소가 2층에 있었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소접근권침해]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 몸이 많이 불편해 집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거소투표라는 것을 몰라 투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

14) 소비자권리

소비자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79건으로 전체 9.4%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복지대상이라는 범위를 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인식하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 소비자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4-29> 소비자의 권리 침해

소비자권리(843건 중 79건으로 9.4%)		79(건)	100.0(%)
보험금융사용권차별	보험가입제한	11	13.9
	보상금제한	25	31.6
	소계	36	45.6
구매권차별	서비스기관출입거부	1	1.3
	구매제한	5	6.3
	불친절및무시	21	26.6
	소계	27	34.2
행정접근권차별	행정접근제한	16	20.3
	소계	16	20.3

가. 보험, 금융 사용권 차별

가) 보험가입 제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며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대체로 거부를 당하게 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험은 가입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어려운가 보다’며 포기하고 만다. 그것이 ‘장애’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근거 자료 제시조차도 제안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요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원천봉쇄’지만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두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교수 신분이지만 목발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담을 끝낸 설계사가 본사에 문의한 후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가입 거부당했다. 또한 웹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도 보행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1급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에서 거부당했다. 특수학교 교사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며 일반 교원보험에서 제외시킨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항의를 통해 시정되었다. 보험사가 기본적인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럴 것이다”는 것이 대답의 전부이다. 근거자료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신지체나 자폐를 갖고 있는 경우 그 흔한 여행자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여행 팀보다 철저한 준비와 자원활동가 확보 등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나) 보상금 제한

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장애를 이유로 턱없이 적은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기왕력’이라 하는데, 기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직장을 구해 장래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장애’를 ‘무능력’과 연결 지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통의 위자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최근에 연구되어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논문만을 인용하며 적용하고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국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나. 구매권 차별

가) 음식점 등 서비스 기관 출입 제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는 상점 등이 있다. 자리가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비좁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문 앞에서 거부하거나, 음식이 짜고 매워서 먹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거부한다. 이는 예전에 내놓고 소금을 뿌리거나 밀치는 행동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방식도 점점 고도로 치밀해지고 있다. 또한 뇌성마비를 장애인이 팩스를 보내러 문구점에 갔는데, 언어장애 때문에 발음이 정확치 않은 것을 보고는 제대로 알아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1000원을 주며 나가라’고 한 경우도 있다. 한 시각장애인이 길을 묻기 위해 상점에 들어갔는데 이 때에도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돈 1000원을 주며 나가라고 하기도 했다. 너무나 당혹스러워 아무 말도 하

지 못한 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을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어린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일쑤고,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도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다.

나) 불친절 및 무시

장애인은 돈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겉모양만 보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보편적이지만 특히 장애를 갖고 있으면 손님 취급도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한다. 한 시각장애인은 옷을 사러 갔는데 동행인이 있음에도 시각장애인을 위부터 아래까지 찬찬히 뜯어보고 있어서 상당히 민망했다고 한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 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관계자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불평불만 하기 일쑤고, “왜 돌아다니느냐?”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1시간동안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고친 후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역장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니 폐쇄해야겠어! 애물단지야, 왜 자꾸 돌아다니냐!”란 말을 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용카드로 제시했더니 “장애인이라고 할인해 줄 수 없다”고 면박을 받은 적도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일반 상점의 상인들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돈 없고, 인격 없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태도들이다. 일반인의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교육은 전국민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간단한 말 한마디와 태도라고 해도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와 자괴감이 될 수 있다.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소극적이 되거나 당당함을 잃어버린다. 당당한 소비자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다. 행정접근권 차별

가) 행정접근 제한

행정접근 제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캠프에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거나, 장애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단서를 다시 첨부하라는 등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요구하고, 차별 받았다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

하려고 하는데 음박만 지르고 받아주지 않는 사례들이다. 또한 버스의 급회전으로 다쳤는데,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등록하여 했지만 더디게 처리해줬다는 경우도 있다. 자폐를 가진 사람에게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등 절차에서도 행정시스템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모든 걸 장애인당사자 혹은 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며 행정편의주의로 복잡하고 신경을 하나하나 다 써야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항상 간단한 회신으로 처리되는 것,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행정청의 대응에 차별을 느낀다는 사례도 있었다. 많이 움직이기 힘들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관된 시스템과 인적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보험가입제한] 정신지체장애아라는 이유로 보험에 들 수 없다고 한다.

[보상금제한] 지체장애1급 남성, 교통사고 당했는데 기왕력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함.

[보상금제한] 출산 전에 아동보험을 가입했었다. 그런데 장애 진단 후 보상이 안됨.

[구매제한] 정신지체, 핸드폰무료행사를 하는 데 장애를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서비스기관출입거부] 목발에 세균 감염되었다며 치과에서 치료를 거부하였다.

[불친절및무시] 시각장애로 입출금이 어렵다며 카드발급을 해주지 않은 은행. 그리고 불친절한 은행직원의 태도에 화가 난다.

15) 신체자유권리

신체자유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30건으로 전체 3.6%를 차지하였다. 신체자유권리 침해는 장애를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학교, 이웃에게 심한 언어폭력과 무시, 집단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11건으로 접수되었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19건이나 되었다.

가. 심리 및 언어폭력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일관되게 무시 혹은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다. 게다가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병신, 절름발이, 바보, 머저리’ 등의 용어가 들어간 욕설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모욕적이고 심한 상처가 된다. 한 사례를 보면,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오히려 이런 욕설을 했는데도 수사관계자는 계속 방관한 일도 있었다. 이럴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하 용어 사용금지’를 알려주고 정정, 사과할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당사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걸 모르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다. 같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취급을 해주지 않고 경계하는 태도로 외롭고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 .

<표 4-30> 신체자유 권리의 침해

신체자유권리(843건 중 30건으로 3.6%)		30(건)	100.0(%)
폭력	심리밋언어폭력	11	36.7
	폭력	19	63.3
	성폭력	0	0.0
	누명	0	0.0

나. 폭력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장애인임을 알고는 ‘집에 있지 나온다’며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무시부터 한 것이다. 장애인은 무시해도 되고 힘없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 하다.

다. 성폭력

지역주민들이 정신지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비장애인 남성이 정신지체 남성을 성희롱, 학대 한 경우도 있었다. 사리분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맘대로 했지만, 불안과 공포를 갖게 돼 부모들이 끈질긴 추궁 끝에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청각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집에 밤늦게 들어가 소리 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폭행을 저지른 이웃남자도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

체제기 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라. 누명

몸이 불편해 체육시간마다 교실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으로도 속상했는데, 물건을 도난 당했다고 범인으로 몰리기도 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건에 욕심이 많고 음흉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신체자유권리 침해는 장애를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학교, 직장, 이웃에게 심한 언어폭력과 무시, 왕따 당하는 경우가 11건으로 접수되었고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19건이나 되었다.

[심리및언어폭력] 지체장애, 자동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되자 심한 욕설과 면박을 주었다. 억울하다.

[심리및언어폭력] 동네 사람들이 장애를 이유로 자꾸 비하하고 무시한다. 자살하고 싶다.

[심리및언어폭력] 지체장애, 체육시간에 혼자 교실을 지키다가 도둑으로 몰렸다.

[폭력] 뇌병변장애, 경찰이 똑바로 쳐다본다며 폭행하였다.

[폭력] 동네에서 길을 잃어 경찰서에 들어간 정신지체인을 경찰이 구타하였다.

16) 재산권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는 총 843개의 차별사례에서 65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하였다. 정신지체나 자폐, 정신장애인의 인감을 빌려가 대출을 받는 것이다.

<표 4-31> 재산권의 침해

재산권(843건 중 65건으로 7.7%)		65(건)	100.0(%)
재산상불이익	사기	28	43.1
	절취및갈취	22	33.8
	상속권제한	15	23.1

혹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 받아 도망가고 만다. 또한 장애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몇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카드를 통한 사기나 절취 및 갈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카드인줄 모르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빌려주었는데 대출, 현금인출을 하고 달아나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된 경우가 7건이나 되었다.

대부분 친척이나 주위사람 등 지인을 통해 카드 사기 사건이 일어났으며 사기를 당하거나 절취 및 갈취를 당한 경우 장애를 가진 자신을 무시하여 돈을 빼앗고 갚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 재산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정신지체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친척이나 형제가 이를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모가 상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경우 등 장애를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등 상속권 침해도 15건으로 23.1%나 차지하였다.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나 절취 및 갈취를 당한 경우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50건이 되었다. 부모가 상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경우 등 장애를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등 상속권 침해도 15건으로 23.1%나 차지하였다.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법원에 한정재산자 선고를 받게 하고 재산을 맘대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에 성년후견인제도가 꼭 필요하다.

[사기] 아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2천만원 대출받고 차량 2대를 구입한 후 되팔아 버렸다. 돈은 갚을 길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사기] 동거남이 장애인명의로 주택을 일방적으로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절취및갈취] 지체장애 여성, 남편이 들어 둔 보험금을 형이 갈취하였다.

[상속권제한]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하려고 하는 데 딸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

[상속권제한] 시각장애 여성, 사별한 남편의 유산 상속하려는 데....

제 5장 장애인 차별과 인권의식 증진 방안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의 개념, 외국의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장애인 인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장애인도 함께 향유하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배제 당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권리의 나열에 의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적인 권리로 확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급부가 아니라 장애인이 모든 생활의 주체가 되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내재되어 있는 차별기제를 없애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권과 관련하여 정책적 우선 과제로서 인권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회적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인권 관련 연구의 활성화

기존의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연구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원론적인 수준의 태도나 인식수준의 파악정도로 그치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사례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방법론이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본격적인 지표의 개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주요외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함께 각 영역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장애인 인권의 의미에 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의 재조명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이와 함께 장애인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비스 양의 확대를 통해 수급자격의 확대와 서비스 양의 확대, 그리고 서비스 질의 내실화와 보편화를 통해, 개인의 권리에 대해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인권옹호 시스템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한 인권 동향과 그 성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증진이 장애 당사사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방안과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한 자조집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청되고 있다.

한편 차별사례의 유형화와 내용분석을 통해서도 지체, 시각, 청각언어 등 신체적 장애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노동권, 정보접근권과 같은 사회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했으며,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의 자의에 의한 입소와 같은 자기결정권 침해, 신체상의 폭력 등과 같은 자유권의 침해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할 권리의 침해는 외국에서도 대표적인 차별영역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각 차별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분석되지 못한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 영역과 감각기능이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사례분석에도 나타나 있듯이 시각이나 청각장애의 경우 정보접근에 대한 욕구가 큰 반면 이에 대한 인권 관점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역별로 구분했을 때는 물리적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분류한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보험과 금융, 구매권 등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불법구금이나 피해자로서의 형사상의 권리, 사기나 상속 등의 재산상의 권리, 수당이나 도우미, 보장구 등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 문화향유 권리, 건강권, 가족내 권리 등에서도 차별사례가 밝혀졌는 바, 향후 주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정책적 필요도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로서의 권리, 생존권을 포함한 복지급여의 권리, 건강권, 형

사상의 권리 등이 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종합해 본다면,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본격적인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더불어서 장애정책과 제도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특성과 차별영역별로는 정신영역의 장애와 감각기능의 장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인권침해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접근권, 소비자로서의 권리, 생존권을 포함한 복지급여의 권리, 건강권, 형사상의 권리 등이 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법·제도적 개선

1) 차별금지의 원리 적용 및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분야에서 장애인은 원서접수 거부, 모집공고 제한, 면접시 탈락, 부당 해고 등 노동기회의 차별, 승진차별, 퇴직강요, 임금체불,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차별, 산재인정 및 산재보상의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취학기회가 제한되고 모집요강에서부터 장애인을 배제하는 등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더구나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등 기본적 자유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

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현행 법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관련법률인 장애인복지법(제4조 및 제8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4조), 특수교육진흥법(제13조)에서도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정신보건법(제41조)에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조문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나 절차 또는 벌칙을 규정한 것은 특수교육법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규정이며,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 인권 및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적인 관련법의 제정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로 인한 광범위한 차별에 대한 규정 및 이를 시정하고 차별을 받았을 경우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차별의 종류를 다양하게 나열할 필요가 있다.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특히 일반인에게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고 교육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차별을 바탕으로 ‘장애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차별금지 및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생활의 권리 및 차별

지역생활의 범위는 광범위하나 고용, 교육 등의 차별은 차별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으로 묶고 나머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차별을 규정한다. 출생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 혼인, 출산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수화와 점자에 관한 권리,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지역생활 권리 및 차별금지, 선거 및 참정권 및 차별금지, 형사사법에 대한 차별금지, 명예훼손 금지, 학대, 유기, 금전적 착취의 금지, 시설설치반대의 금지, 재활보조기기 등의 착용과 관련된 차별 금지, 돌보는 자 등

동반과 관련된 차별 금지 등의 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고용에서의 차별

고용차별이란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관계의 성립, 내용 및 종료 등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고용에서 장애차별 금지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퇴직, 직장내 교육 분야이다. 고용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임시직 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근로계약관계를 말하며 근로계약 개시 이전단계(모집, 채용 등), 근로 관계의 종료 등 파생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단지 장애인을 모집, 채용, 모집, 임금, 승진, 배치, 퇴직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장애인의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합리적 배려의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 배려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조, 장애인이 담당하는 임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할당, 현존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이동, 필요시 근무시간의 변경, 재할, 기능평가, 또는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훈련 제공 또는 훈련 제공에 있어서의 배려,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낭독자 또는 수화 통역자 등의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별히 신체적 조건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많고, 이에 따른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 의학적 검사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용주와의 불평등하고 불이익한 계약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주,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법률 판단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교육에서의 차별

일반 원칙으로 통합교육을 내세우고,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며, 학생의 요구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요구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한다. 교육에서의 차별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교육기관,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법률 판단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④ 이동, 건축물에서의 접근 등에서의 차별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활하고, 사회 통합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 및 차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동, 건축물, 각종 정보매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축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일반 생활에서의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이용시 장애인은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금지하고 장애인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⑥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이나 정책은 다수집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소수집단은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법률에서 결격조항을 두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이런 차별적 요소들을 철폐하기 위해 결격조항을 정한 규정을 무효로 추정하며, 앞으로의 입법에서는 이 법의 정신에 맞게 결격조항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활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생활시설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생활시설 내에서 특별히 벌어지는 차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예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미신고시설이 637개소에 이르고, 이 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신고시설뿐 아니라 미신고시설도 법의 적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권문제 전담 관련기구 설치 필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를 조사하거나 담당하는 관련기구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와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동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인데, EEOC는 ADA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의 실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조정 등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법에 의해 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1999년 위원회 법을 제정하여 조사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기구의 설립방안을 모색해보면, 독립기구를 두는 방안, 기존의 행정기구를 이용하는 방안, 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현실적인 타당성을 고려할 때,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로 장애차별금지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해 볼만하다. 장애차별금지위원회는 분쟁에 대해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위원회의 성격은 공공부문만을 관할하는 일반 옴부즈만이 아니라 특수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민원구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특별 옴부즈만²³⁾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형태가 필요하다.

각국의 차별옴부즈만(인권위원회)을 살펴보면, 1977년 국가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한 뉴질랜드의 경우 차별행위민원을 조사·구제하고 있으며, 이 인권위원회는 개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기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감시, 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기능 그리고 국내외 인권기구와의 연대기능 등을 수행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등 인권문화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동등기회옴부즈만, 인종차별옴부즈만이 있으며,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도 연방인권위원회와 주인권위원회가 있으며, 영국도 인종차별위원회, 동등기회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있다.

장애차별위원회를 특별옴부즈만의 형태로 할 경우,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직접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그 시정을 권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구제방법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뿐 아니라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

23) 이러한 특별옴부즈만의 예로는, 차별옴부즈만, 경찰옴부즈만, 교도소옴부즈만, 공정거래옴부즈만, 군사옴부즈만, 아동옴부즈만, 소비자옴부즈만, 언론옴부즈만, 대학옴부즈만, 의료옴부즈만, 은행옴부즈만, 부동산거래옴부즈만, 법조옴부즈만, 보험옴부즈만 등이 있다.

인권보장에 대한 현대적 추세 중의 하나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초국가적 대처라고 할 수 있다(허영, 2001). 이에 따라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 등 장애인 인권을 세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은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 각 국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선언보다 조금 더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국제 협약이다. 국제적인 인권확보를 위해 제정된 주요한 협약 중 장애인이 포함되는 협약은 사회권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자유권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고문 등 방지 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차별금지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인종차별금지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등의 협약이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UN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Gerard Quinn and Theresia Degener, 2002). 2002년 11월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UN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조하고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복지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적인 생활이란 어떤 지원도 없이 장애인이 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방치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은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 차별’이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존권문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한 지원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서비스들이 규정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더 필요한 지원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양육권 보호를 위해 여성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 의료비 지원을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만 한정하고 있으나, 대상을 더 확대하여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월 16만원)을 고려하여, 장애별, 장애정도별 수당금액을 정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장구와 관련하여서는 전동휠체어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애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모든 첨단 보장구를 지급하고, 의료보험 품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을 개정하여 우선 시설입소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입소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퇴소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편의시설정비대상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학교는 제외됨에 따라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도 편의시설 정비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용 콜택시 등을 확대하여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은 주로 이동권 보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특수교육진흥법

일반학교, 대학교, 특수학교에서 학습도우미, 이동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에겐 수화통역사를 시각장애인에겐 활자가 확대된 교재, 점역교재, 음성녹음 교재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이 규정되어 있으나 50% 이상의 장애인아동이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유치원에서는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정부지원이 없어 통합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관련 법

산재보상 및 민간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기왕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왕력이란 기존의 장애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바,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여성장애인이 타이피스트로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산업재해를 당해 한쪽 팔을 잃게 된 경우 이 장애인은 더 이상 타이피스트로서의 직업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이 월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나 기왕력으로 월급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 경우 빈곤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이 추가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공연·전시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모양으로, 모양을 소리로 바꿀 수 있는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 특정 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진다면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서 자막처리, 수화처리, 소리전환 등을 신설하고 이 경우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형사절차 중 많은 차별 및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경우 부모, 가족, 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등의 대동 하에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

하다. 현재는 수화나 자막방송 실시, 점자 공보물 배포 등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방송매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방송 등에서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송매체를 확대하고 현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후보들의 공보물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녹음테이프 등으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체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원할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제고

1) 인권교육

장애인인권을 함양하고 이의 바탕이 되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인권운동사랑방, 1999). 우선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 유엔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 인권보장과 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과 인권보장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로 인한 차이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교육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체험 등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 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 이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에 잘 드러나 있다.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7년 7월 교육관련 백서에서 국가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제안했으며, 일본은 1995년 12월에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본부를 설립하였으며, 1997년 7월에는 광범위한 인권교육 행동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호주에는 1998년 12월 ‘국가 인권교육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Education)’가 설립되었다.

이런 노력에 의해 인권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연구, 소개되고 있다. 장애인권 교육은 장애인, 장애로 인한 차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캠페인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또한 교육과정 중 장애체험을 통해 편견을 없애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나 국가 기구가 없다. 따라서 아직도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관한 행동계획도 없다. 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위에서 담당하거나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 특히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사회교육을 하여야 할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언론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한가지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그 동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장애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1999년 말 통과된 ‘통합방송법’에 의해 열리긴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제5장 제69조 제6항에서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장 제70조

제7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2001년 여성단체연합에서 제작한 ‘호주제 폐지,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란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 제5장 제51조 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환경에서 장애인문제를 올바르게 알리고 일반시민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자그만 통로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해서 각 영역별로 홍보효과가 큰 자료들을 개발하여 제작하고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장 결론

17~18세기에 천부의 인간고유의 권리를 강조하고 선천적인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를 국가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역설함으로써 자유주의 인권사상이 여러 나라의 인권선언과 헌법에 수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자유권 중심의 생활질서가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과 폐단을 시정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평화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이념이 국가의 정책적인 가치지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허영, 2001).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개념은 다수를 위한 역사였다. 소수집단은 사회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소수의 배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20세기 후반 진행된 여성운동, 인종운동, 장애운동 등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Oliver, 1996). 즉, 복지의 확대에 의하여 중산층 이상 다수의 사회권, 예를 들면 빈곤의 타락으로의 위험에 대한 방지, 공중위생의 확립, 교육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제외될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확보되었으나, 소수자의 사회권은 논의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다수집단은 소수자들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명목 하에 복지(welfare)의 영역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획득해줄 것처럼 하였으나, 이로 인해 장애인, 여성, 흑인 등은 사회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만 더욱 커진 상태가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존재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의 장애인들 중 2/3이상이 후진국에 살고 있다. 후진국에 있는 장애인들 중 2%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Gerard Quinn and Theresia Degener, 2002). 우리 나라는 이 보다는 사정이 좋기는 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장애인 중 22.1%는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처럼 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취업이 어렵게 되고 경제생활도 어렵게 되고 결혼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과 차별이 또 다른 장애를 만들고, 장애 문제를 심화시키며, 실제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

리시켜 많은 경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짐스러운 존재로 만든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장애와 빈곤, 사회적 배제간의 연결은 직접적이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사회권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국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로막는 어떤 상황 또는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inclusion)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격리(exclusion)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격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제거하고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기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차별을 지표화할 수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실질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언론의 활용, 홍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길인배, “장애인 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6.
- 김대순, 『국제법론』 제3판, 삼영사, 1998.
- 김동호,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본 한국장애인복지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미혜·이선희, 계간지 『사회복지 봄호』, 1998.
- 김성재, 『장애우 정책 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김성재, ‘장애인의 인권과 그 보장 방안’,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1998.
- 김승국,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모형 개발연구”,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999
- 김용득·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1999.
- 김은경, “장애인복지운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그 성과의 분석”,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1.
- 김영순,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김정열, ‘장애인 권익 운동의 새로운 지평’, 『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 토론회 자료집』, 2002.
- 김정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1996.
- 김형곤, “자연법이론의 기본적 인권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1989.
- 김형식·여지영 역, Jim Ife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 김형식,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8.
- 나운환, ‘ADA와 21세기 한국의 재활정책’, 『함께걸음』, 1992.
- 남용현, “독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균등을 위한 법(BGG)’에 관한 소고”, 미출판 원고. 2002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15집, 2000.
- 문태훈,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의 설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제5권, 1996.
- 류은숙,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에서 본 우리 나라 사회권 보장 : 정부 최초 보고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박래균 등,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도서출판 사람생각, 1999.
-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1.
- 서준식,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 송영옥·에이타 야시로 외, 『ADA(America Disabilities Act) 충격』,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 1993.
- 송영옥·이익섭 역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한국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8.
- 여준민, ‘소송 운동을 통해 본 장애인 권리 찾기’, 『현장 특수교육 3/4』, 2002.
- 여준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확보해야’, 『현장 특수교육 5/6』, 2002.
- 오혜경·김정애,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2000.
- 우주형, “장애인 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유동철, “장애인 시민권 모델을 위한 시론: 장애차별금지법”, 계간 사회복지, 2002.
- 윤후정, 『기본적 인권과 평등』, 박영사, 1997.
- 은종균, ‘장애인의 인권’,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 사회권연대회의, 2001.
- 이동석·안선영, “장애차별금지법 법안 설명”,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 이성규, “장애인차별금지법-영국의 장애인차별법을 중심으로”, 『장애인고용』, 1996.
- 이용교,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성과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1.
- 이익섭,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과 행동지침”,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권, 1993.
- 이익섭,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 전략 및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한국아·태장애인10년연구모임, 1995.
- 이익섭 역, UN인권위원회 편, 『인권과 장애』 한국DPI,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2.
- 이재연 외 11명, 『한국의 아동지표』,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지사, 2001.
- 이정은, “한국에서의 인권 개념 형성과 인권 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정은, ‘사회권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사람생각, 1999.
- 이태곤, “그래도 재미있는 세상이지요-희망의 뒤편길에 서 있는 장애우들”, 월간 함께걸음 편집부, 1999.

- 이태재, 『법 철학사와 자연법론』, 법문사, 1983.
- 이현준, ‘세계의 장애인’, 『장애인 왜 인권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
- 인도주의의사실천시민협의회 장애인분과 역, 켄트 헐 지음, ‘장애인의 권리-The Rights of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도서출판 인의협, 199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역, Babara Hillia 저, 『페미니즘과 장애-Feminsm And Disability』, 2000.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Laura Hershey etc,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 Women with Disabilities: Found Voice』, 199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1994.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6-2001년 장애인 인권 침해 상담 사례집, 1996-2001.』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사』, 1996.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가정 내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사』, 1996.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사』, 199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1998.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198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왜 인권인가』, 2001.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사회의 장애인 인권 침해의 현황과 과제』, 2001.
- 조문순, 이동석,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 제언”, 『대구재활연구』, 2002.
- 조용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2001.
- 진원식, “무기여 장애인금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199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 장애인 인권 침해유형조사’,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 기초 자료, 200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인권 지침서』, 2001.
- 황정미, “여성인권정책”, 국회입법조사관실 입법자료, 2001.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국의 문헌>

- 나카노 요시타스 편, 『國際聯合과 障礙者 問題』, 엔파와멘토 연구소, 1997.

障害者政策研究全國集會實行委員會 政策研(障害者差別禁止法作業チーム), 障害者差別禁止法
要綱案-骨子案, 2001.

Brian Doyle,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Employment Rights of Disabled Persons*,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95.

Colin Bourn & John Whitmore, 1996, *Anti-Discrimination Law In Britain*, Sweet &
Maxwell

Colin Barnes, Geof Mercer, & Tom Shakespear,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Polity Press, 1999.

Felicity Armstrong, Len Barton, *Disability, Human Right and Education*, Open Univ.
Press, 1999.

Gareth Thomas, *The New Law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Sweet & Maxwell, 1997

Gerard Quinn and Theresia Degener, *Human Rights and disability*,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02

Jeremy Cooper & Stuart Vernon, *Disability and the Law*,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996.

Michael Oliver, *Understanding Disability*, St. Martin's press, 1996.

Nancy B. Miller, Catherine C. Sammons, 1999, *Everybody's Different*,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Posner, R., An economic analysis of sex discrimination law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6, 1989.

Richard K. Scotch, *From Goodwill to Civil Rights*, Temple Univ. Press, 2001.

Robert A. Chubon, *Social an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Rehabilitation*,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96

Romel Mackelprang & Richard Salsgiver, *Disability: A Diverse Model Approach in
Human Service Practice*, Brooks/Cole Publishing Co. 1999.

<인터넷 자료>

<http://www.unhchr.ch/html/menu6/1/initiatives.htm>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c. 50),

<http://www.legislation.hmso.gov.uk/acts/acts1995/95050--b.htm#5>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ttp://www.usdoj.gov/crt/ada/adahom1.htm>

Adrienne Rubin Barhydt, 'Why a disability right?'

<http://www.kscic.or.k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www.mofat.go.kr/ko/index.m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ttp://www.mofat.go.kr/ko/index.mof>.